

성과감사

감 사 보 고 서

- 건설산업 불이익 제도운영 실태 -

2021. 7.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4
III. 감사결과	9
1. 감사결과 총괄	9
2. 불이익 제도 분야	11
3. 행정처분 이행 분야	35
[별표]	77
IV. 개별처분요구사항	89

표 목차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2
[표 2] 건설산업 관련 주요 불이익 제도	7
[표 3]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8
[표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8
[표 5] 분야별 지적사항	9
[표 6] 반기별 벌점 부과 현황	12
[표 7] 건설산업 관련 행정처분 규정 비교	13
[표 8] 등록기준 미충족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23
[표 9] 최근 5년간 건산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25
[표 10]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35
[표 11] 영업정지 기간 감경 및 가중사유 기준	37
[표 12] 시정완료 감경을 적용한 건설사업자 현황	40
[표 13] 법정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감경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추가 감경 등 명세	43
[표 14]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미보완한 건설사업자 처리 현황	48
[표 15]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현황	50
[표 16]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현황	53
[표 17] 벌점 총괄표 등 통보 현황	57
[표 18] 누계 평균벌점 관련 주요 불이익 활용 현황	58
[표 19] 법령 위반 건설기술인 및 건설사업자 등 통보 명세	62
[표 20]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처분 법령 명세	62
[표 21]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64
[표 22]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고발 조치 현황	69

그림 목차

[그림 1] 행정처분 절차 및 관리 체계	7
[그림 2]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불이익 적용 법령 현황	11
[그림 3] 벌점 부과 체계	12
[그림 4] 업무정지 위반 건설기술인에 대한 제재 변경 추이	15
[그림 5]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행정처분 차이	17
[그림 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절차	20
[그림 7]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절차	35
[그림 8] 건설업 실태조사 절차	36
[그림 9] 벌점 통보 등 업무 절차와 벌점 산정방법	58
[그림 10] 행정처분 절차	71

도표 목차

[도표 1] 연도별 건설업,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업체 및 건설기술인 수	5
[도표 2] 연도별 건설업, 건설기술용역업 수주실적	6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품질, 안전 확보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사항과 건설업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실 공사 예방과 등록기준 미달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등록 업체(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은 2019년 기준으로 각각 7만여 개, 90만여 명이고, 건설산업 등록 업체가 받은 행정처분은 2019년 기준으로 1.1만여 건이다.

그런데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일부 행정처분은 과도하고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이에 행정처분의 형평이 어긋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이 형평성,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행정처분기관이 법령 위반자에 대해 법령에 맞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감사원은 건설산업 불이익 제도와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성과감사를 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17년 이후 최근 3년간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불이익 제도 분야와 행정처분의 이행 분야로 나누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서 정한 불이익 제도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비교·분석한 후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행정처분기관이 관련 법령에 맞게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분야별 감사중점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불이익 제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행정처분 및 등록기준 실태조사의 기준이 적정하게 제정·운영되는지 ■ 과징금 부과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 소방시설업자의 부실 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행정처분 이행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위반 업체·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부실 설계·시공 등에 따른 벌점 부과와 관리(활용)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불법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때 이루어지는지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2020. 10. 12.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건설산업 행정처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취지 및 연혁, 행정처분기관의 행정처분 현황, 언론보도 사항, 국회 논의사항, 대법원 판례 및 각종 연구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이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고려하여 2020. 12. 7.부터 2021. 2. 26. 사이에 20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지감사 기간 동안 대상기관 책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1. 7. 8.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업무 현황¹⁾

【 범 례 】

이하 다음의 약칭을 사용한다. 다만 보고서 목차, 처분요구 제목, 조치할 사항이나 보고서 문맥상 본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본래 명칭을 사용함

<기관명>

- 국토교통부: 국토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국토관리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국토관리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국토관리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국토관리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국토관리청
- **센터: **센터

<법령명 등>

-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
- 「건설기술 진흥법」: 건진법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타>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건설기술경력증 등
-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대여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감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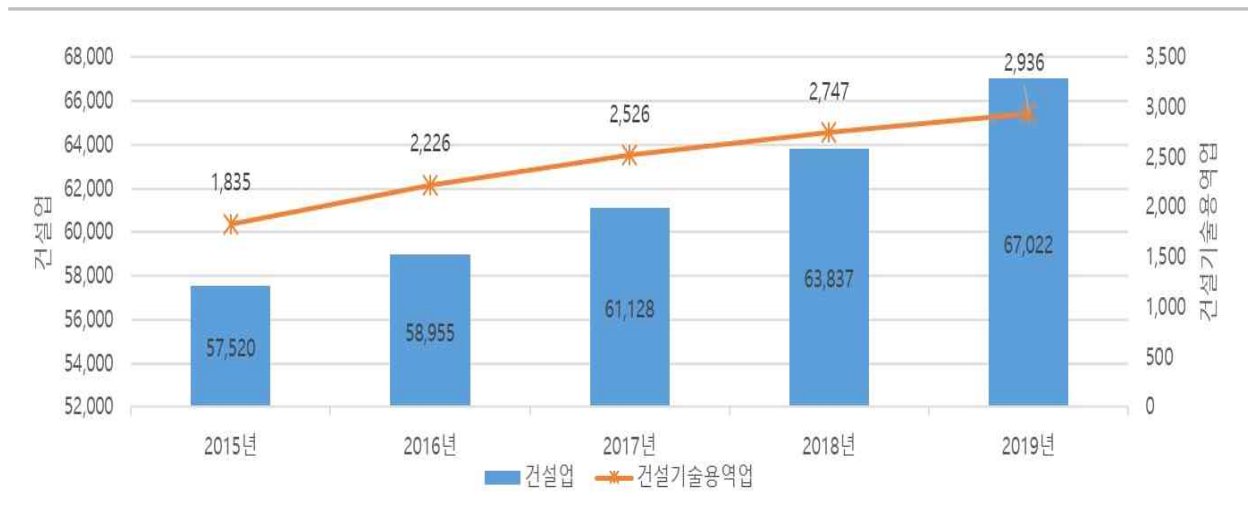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1. 건설산업 일반 현황

가.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 현황

건설법 제2조와 건설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과 건설기술에 관한 조사, 설계,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으로 구성되고, 건설기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학력, 경력 등 자격을 갖추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도표 1]과 같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건설업,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와 건설기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표 1] 연도별 건설업,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업체 및 건설기술인 수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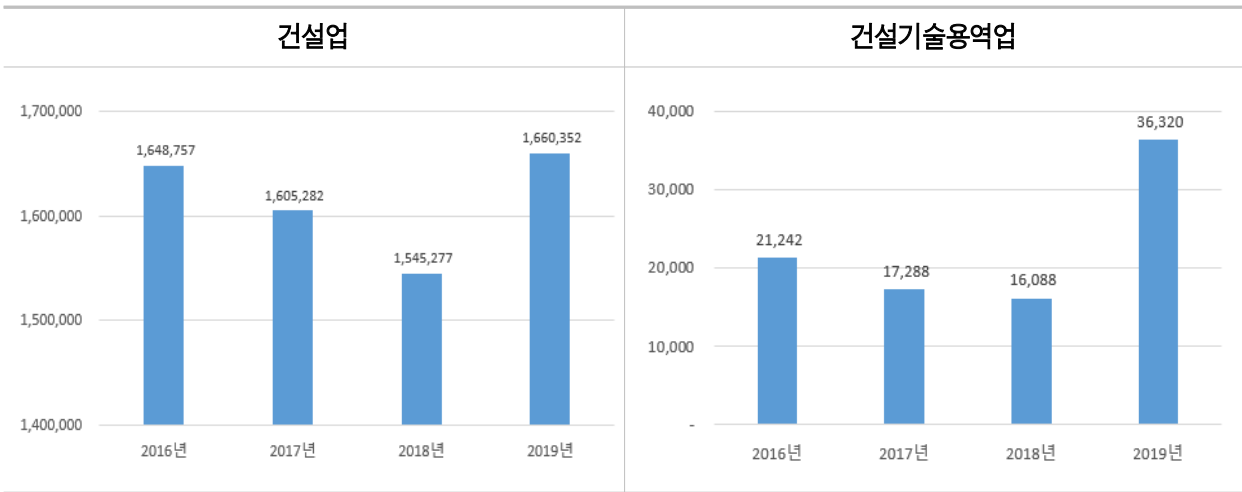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설업	57,520	58,955	61,128	63,837	67,022
건설기술용역업	1,835	2,226	2,526	2,747	2,936
건설기술인	750,962	777,125	802,117	828,868	905,703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수주실적

건설업의 수주실적은 [도표 2]와 같이 2016년 165조 원에서 2018년 154조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집행액이 증가하면서 166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건설기술용역업은 같은 기간에 2.1조 원(2016년)에서 1.6조 원(2018년)으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3.6조 원으로 증가²⁾하였다.

[도표 2] 연도별 건설업, 건설기술용역업 수주실적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설업	1,648,757	1,605,282	1,545,277	1,660,352
건설기술용역업	21,242	17,288	16,088	36,320

자료: ○○협회 및 **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건설산업 불이익 제도

가. 건설산업 불이익 제도의 종류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계·시공 등의 부실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리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건산법, 건진법 등에 건설사업자,

2) 2019년부터 조달청 계약통계가 포함되면서 증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기술인 등에 대해 법령 위반 내용에 따라 [표 2]와 같이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거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 제도가 있다.

[표 2] 건설산업 관련 주요 불이익 제도

법령	처분대상	처분기관	관련 조항	처분내용
건산법	건설사업자	시·도지사	법 제81조	시정명령
			법 제82조	6개월~1년 이내 영업정지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부과 가능)
			법 제83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1년 이내)
건진법	건설기술인	지방국토관리청	법 제24조	업무정지(2년 이내)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도지사	법 제3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2년 이내,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부과 가능)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인 등 ¹⁾	발주청 등 ²⁾	법 제53조	벌점 부과 (부실의 정도에 따라 1~3점 부과)

주: 1.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기술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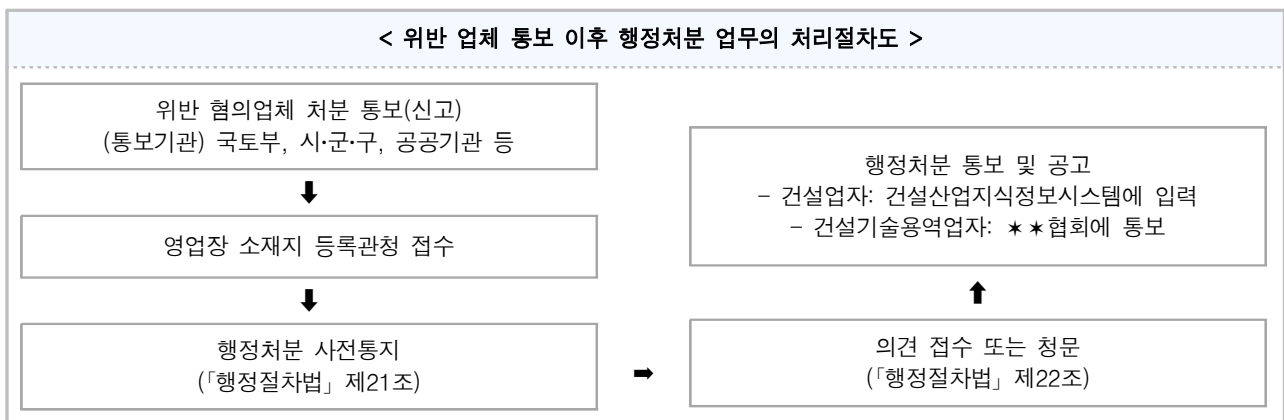
2. 발주청,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자료: 건산법, 건진법 관련 내용 재구성

나. 건설산업 불이익 처분 및 관리 체계

행정처분기관(시·도지사) 등은 처분요구기관의 요청 등을 받아 [그림 1]과 같이 건산법, 건진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 위반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고, 행정처분 정보 등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1] 행정처분 절차 및 관리 체계



자료: 건산법, 건진법 관련 내용 재구성

다. 건설산업 불이익 처분 현황

시·도지사가 최근 5년간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법 제82조와 제8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처분한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정명령	8,708	9,716	8,087	6,064	3,090
영업정지	3,311	2,288	2,595	2,278	1,920
과징금	82	141	249	131	121
등록말소	1,387	1,956	1,935	1,262	976
과태료	4,302	4,629	7,035	8,299	4,861
합계	17,790	18,730	19,901	18,034	10,968

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그리고 시·도지사가 최근 5년간 법령을 위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건설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처분한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영업정지	3	14	6	9	10
과징금	0	2	3	5	6
등록취소	0	0	1	0	3
과태료	65	415	148	343	203
합계	68	431	158	357	222

자료: **협회 제출자료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5]와 같이 국토부, 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등을 대상으로 불이익 제도 분야, 행정처분 이행 분야에서 총 2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5] 분야별 지적사항

(단위: 건, 명)

구 분	합 계	징계(인원)	주의	통보	통보(시정완료)
불이익 제도 분야	3	-	-	3	-
행정처분 이행 분야	18	3(5)	9	4	2
건수 계	21(5)	3(5)	9	7	2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분야	주요 감사결과
불이익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업무정지 위반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거나 영업정지 위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등록취소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중복하는 등 건진법의 행정처분 기준 불합리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업자가 장기간 미납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영업정지로 변경 처분할 근거가 없고 하도급 계약의 부당특약에 대해 수급인이 강요한 경우에만 행정처분 하는 등 건산법의 행정처분 기준 불합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법적 근거 없이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부실 벌점제도를 운영
행정처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법령을 위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근거 없이 감경하거나 최대 감경한도(2분의 1)를 초과하여 부당 감경 ▶ 서울특별시는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 처리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 처리 태만 ▶ 국토부 관하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려준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 정지를 지연 처리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린 건설사업자 등을 행정처분기관(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 ▶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 수를 누락하거나 일부만 반영하여 벌점 총괄표를 통보하고 있어 관리 중인 벌점을 신뢰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이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업무정지를 위반한 건설기술인에게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를 위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를 중복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진법의 불합리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며,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업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후 영업정지로 변경 처분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담당자가 별점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며 앞으로 별점총괄표를 부실하게 작성·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서울국토관리청 등 3개 국토관리청장에게는 행정처분기관에 통보를 누락한 건설사업자 등의 위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과 인천광역시장에게는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 등에게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감경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장기간 지연 처리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하는 등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불이익 제도 분야

2.1. 실태

국토부는 건설법 제3조에 건설산업을 설계,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정하고, 건설법 제7조와 건진법 제28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주체인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기술인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림 2]와 같이 건설법, 건진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림 2]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불이익 적용 법령 현황

법령	건설법	건진법	「국가기술자격법」
처분대상 위반행위 (처분 종류)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등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등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건설기술인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등(업무정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등(자격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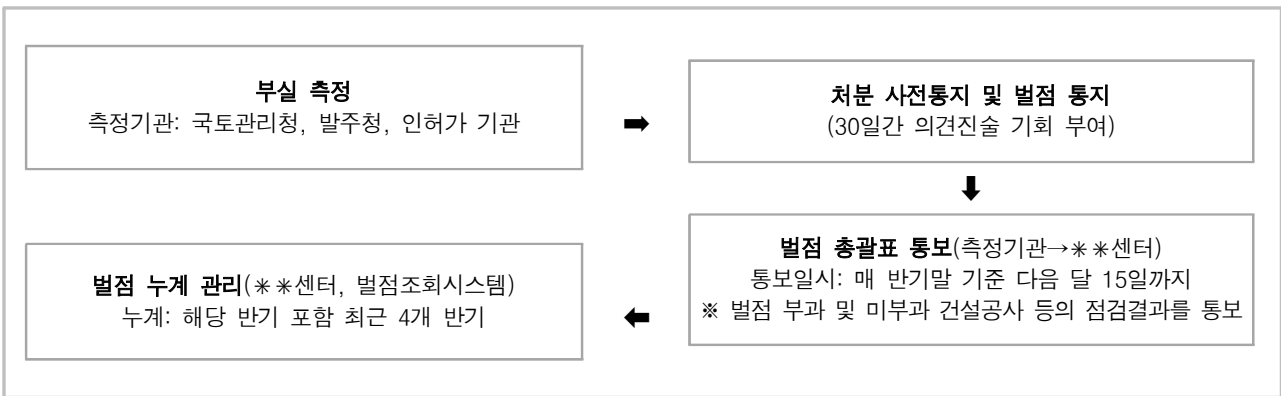
자료: 건설법, 건진법,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내용 재구성

한편, 법령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건설사업자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등록 이후 자본금, 기술인력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설공사 등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 건설법 제83조 및 건진법 제31조 등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는 등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따라 받는 불이익은 비슷하다.

또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부실의 경우 건진법 제53조에 따라 발주청 등이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기술인에게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그림 3]과 같이 별점을 부과하고, 이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서 감점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별점 부과 현황은 [표 6]과 같다.

[그림 3] 별점 부과 체계



자료: 건진법 관련 내용 재구성

[표 6] 반기별 별점 부과 현황

(단위: 개, 건)

연도	별점 통보기관	당해 별점		최근 2년 누계 평균 별점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기술인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기술인
2018년 하반기	233	334	454	681	927
2019년 상반기	260	392	438	732	1,035
2019년 하반기	297	504	432	791	1,157
2020년 상반기	288	550	426	891	1,300

자료: **센터 별점조회시스템

2. 2. 문제점

- ▶ 법령 위반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미비
-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미납자,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미비
- ▶ 상위 법령에 제재 근거 없이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부실 벌점 제도 운영

가 「건설기술 진흥법」 행정처분 기준 등 불합리

국토부는 건설산업(건설업,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품질 제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건산법 및 건진법에 건설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표 7]과 같이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에게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 7] 건설산업 관련 행정처분 규정 비교

구분	처분대상	행정처분		행정처분기관	
		규정	내용	규정	기관
건산법	건설사업자	제82조, 제83조	등록말소, 영업정지(과징금) 등	제91조	시·도지사
건진법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제31조	등록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등	제31조	시·도지사
	건설기술인	제24조	업무정지	제82조	지방국토관리청장

자료: 건산법, 건진법 관련 내용 재구성

1) 업무정지 위반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미비

건진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진법 등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또 다른 위법행위를 행한 것이므로 추가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이미 부과된 행정처분보다 더 중하게 제재하여야 정당하게 행정처분을 이행한 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을뿐더러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효성 있고 공정한 제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건진법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 2차 업무정지 또는 1차 업무정지기간 연장 등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 다른 법령에서의 자격 등 취소 사례 】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6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
- 「식품위생법」 제80조 제1항 제5호: 조리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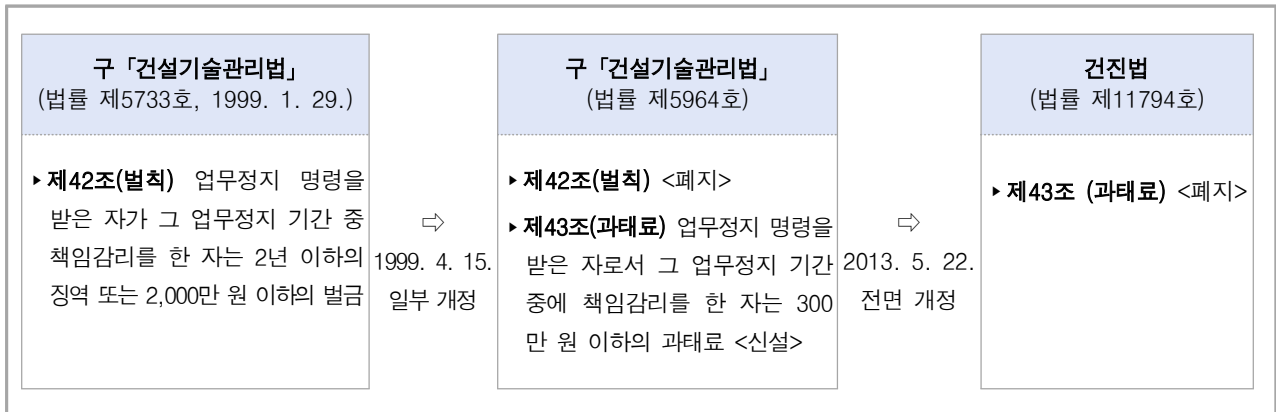
그런데 국토부는 건진법 제24조에 법령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처분받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 설계 등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업무정지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그림 4]와 같이 1999. 4. 15. 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기술인(감리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된 후, 2013. 5. 22. 건진법으로 전면 개정(2014. 5. 23. 시행)하면서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감리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³⁾마저 폐지함으로써 건진법 시행일인 2014. 5. 23. 이후 부터는 건설

3) 2014년 5월 이전 구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11920호, 시행 2014. 1. 17.) 제43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제3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 책임감리 등을 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술인이 법령 위반으로 부과받은 업무정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행정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림 4] 업무정지 위반 건설기술인에 대한 제재 변경 추이



자료: 건진법 등 관련 내용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중 최근 5년간(2016. 1. 1.~2020. 9. 16.)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총 3,668명의 건설기술인 중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 1년간(2017. 12. 5.~2018. 12. 4.)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토목기사 A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 내내 ‘근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용역(산서권역)’에 건설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등 219명⁴⁾(6.0%)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410건의 건설기술용역에 참여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 등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법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설 기술인이 건설기술용역 등에 참여하는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능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업무정지 처분을

4) **협회가 관리·운영 중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된 건설기술용역 실적내용 중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간과 용역참여 기간이 중복된 인원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의 실제 용역 참여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당하게 이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2)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불합리

건산법 제2조 및 건진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크게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건설사업자)과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 관련 용역을 하는 건설기술용역업(건설기술용역사업자)으로 구분되고,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경력을 가졌다고 인정받아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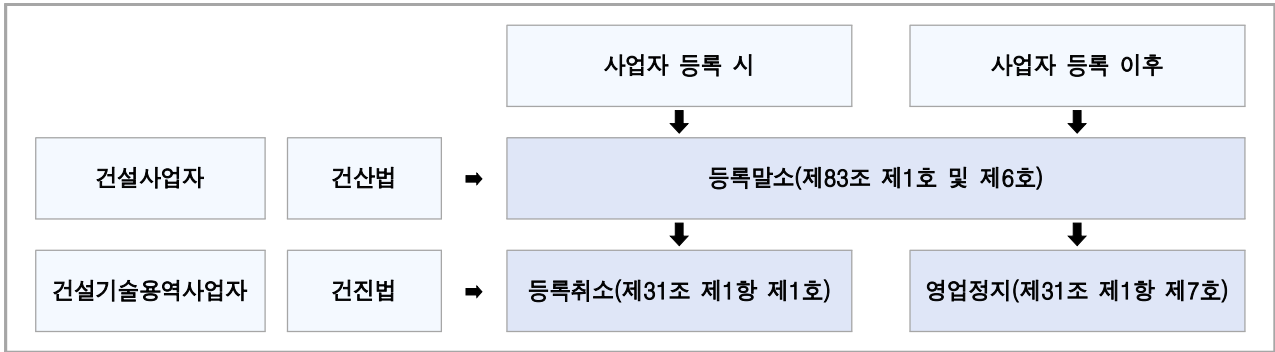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영업정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그림 5]와 같이 건설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등록 이후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진법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 이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만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5]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행정처분 차이



자료: 건산법, 건진법 관련 내용 재구성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 수주 등 영업활동을 위해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는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적정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고,⁵⁾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 이후에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건진법에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이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때와 같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중 2020. 12. 30. 익산

5) 건진법 제89조 제3호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에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한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처벌(징역 또는 벌금) 조항은 있음

국토관리청에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린 혐의로 전라남도(행정처분기관)에 이송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15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1년 2월 현재 폐업한 3개 업체를 제외한 12개 업체 중 건설기술경력증을 발린 10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 미비로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발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한 2개 업체의 경우에는 앞으로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건진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만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발리더라도 건진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영업정지 등을 처분할 수 없거나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발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더라도 영업정지 외에 등록을 말소하지 못하게 되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을 부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뿐더러 동일한 법령 위반으로 등록말소를 받고 있는 건설사업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⁶⁾

3) 영업정지 위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복 부과

건진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과태료(300만 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장 중한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등을 부과하면서

6) 건진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발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못하여 영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지 못함

과태료와 같은 경미한 처분을 추가로 부과⁷⁾하는 것은 제재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지 않은 행정처분으로서 불합리하고,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 등의 문제가 따른다.

이에 따라 법제처·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으로 2009. 8. 2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을 보고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국토부 등에 통보한 ‘과태료·과징금 세부정비기준’에서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중 하나만 부과하고,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법령을 정비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복 처분을 지양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런데 국토부는 2009. 12. 2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부터 ‘과태료·과징금 세부정비기준’을 통보받고도 2021년 2월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등록취소와 함께 과태료까지 중복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건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91조 제3항 제8호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⁸⁾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산법 제83조 제8호에 따라 등록말소만 하고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사업자는 등록말소 처분만 받지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등록취소 외에 과태료까지 추가로 부과받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더 많이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4)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등 실태조사 기준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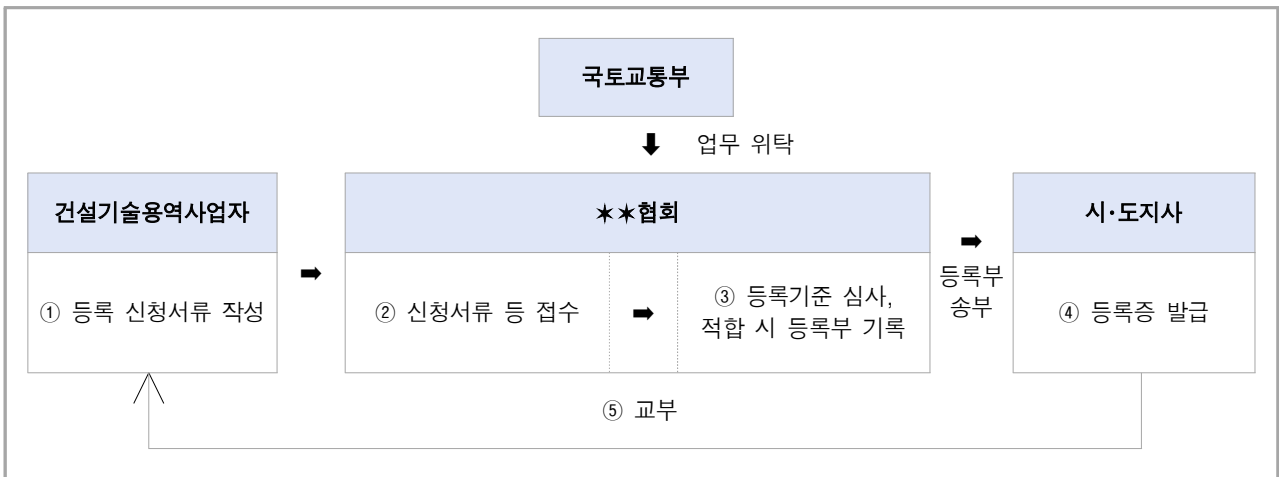
건진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

7) 건진법에 따른 행정처분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벌점부과,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업무정지, 등록취소가 있는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이고 등록취소는 가장 중한 행정처분임

8) 국토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법률 제11295호, 2012. 2. 1.)하면서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복 처분에 대해 사안별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중 1개만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법령은 개정 완료함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림 6]과 같이 **협회(등록 등 업무 위탁기관⁹⁾)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¹⁰⁾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절차



자료: 관계 법령 재구성

그리고 건진법 제3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업¹¹⁾의 경우 건산법 제49조에 따라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¹²⁾이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9) 건진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업무를 **협회에 위탁
 10) 기술인력 고용을 증명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자본금 보유를 증명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11) 건산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하는 업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등록
 12) 건산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업의 등록,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사례 】

- 국토부는 매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등록기준 미달 등 의심업체를 추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2019년의 경우 2,0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등록말소 133건, 영업정지 1,443건, 기타 470건)

따라서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이후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숨긴 채 부당하게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건진법 제38조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시장이 동반 위축되고 있어 기술인력의 감축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2016. 6. 29.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총 209개 업체¹³⁾(등록취소 11건, 영업정지 10건, 과태료 부과 301건)를 적발한 이후에는 추가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1. 2. 1.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13) 전라남도 48개 업체(과태료 116건), 세종특별자치시 1개 업체(영업정지 1건), 충청남도 1개 업체(과태료 1건), 대구광역시 5개 업체(과태료 5건), 광주광역시 4개 업체(영업정지 1건, 과태료 4건), 강원도 5개 업체(영업정지 2건, 과태료 4건), 인천광역시 4개 업체(과태료 4건), 제주특별자치도 9개 업체(등록취소 1건, 과태료 8건), 대전광역시 4개 업체(과태료 4건), 전라북도 20개 업체(과태료 20건), 경상북도 40개 업체(등록취소 6건, 과태료 36건), 경기도 25개 업체(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62건), 울산광역시 9개 업체(영업정지 1건, 과태료 8건), 경상남도 27개 업체(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22건), 충청북도 7개 업체(등록취소 1건, 과태료 7건)

한편,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광역자치단체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 강원도 및 부산광역시 실태조사 사례 】

- 강원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회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여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5건, 과징금 부과 7건, 과태료 부과 38건 등 계 51건을 행정처분
- 부산광역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회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여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과 47건 등 계 50건을 행정처분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총 3,141개 업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후 수주실적이 없어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248개(서울특별시 172개, 경기도 76개) 업체를 표본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B)의 경우 최소 기술인력 10명보다 5명이 부족한 5명만 보유하는 등 [표 8]과 같이 13개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등록기준 미충족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연번	소재지	업체명	등록기준 미충족			행정처분 대상	비고
			사유	기준	실제		
1	경기도	(주)○○	기술인력	10	5	영업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2	"	-	기술인력	5	4	영업정지	"
3	"	-	기술인력	5	3	영업정지	"
4	"	-	자본금	50	-94	영업정지	"
5	"	-	기술인력	5	1	영업정지	"
6	"	-	기술인력	5	3	영업정지	"
7	"	-	기술인력	5	0	영업정지	"
8	"	-	기술인력	5	4	영업정지	"
9	"	-	기술인력	5	2	영업정지	"
10	서울특별시	-	기술인력	10	8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2021. 1. 1.)
11	"	-	기술인력	10	5	영업정지	영업정지 3개월(2021. 1. 1.)
12	"	-	기술인력	10	2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2021. 1. 1.)
13	"	-	기술인력	6	4	영업정지	영업정지 1.5개월(2021. 1. 1.)

자료: 경기도,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기술인력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채 필요할 때만 인력을 일시 충원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며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는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빌리는 시점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처분하고, 영업정지를 위반한 건설기

술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하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 ① 법령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고
- ②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 규정을 마련하며,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고
- ③ 영업정지를 위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가 중복 처분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며
- ④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실태를 조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 ⑤ 기술인력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된 13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 기준 불합리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품질 제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건산법을 제정·운용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및 제83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¹⁴⁾을 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5년간(2015~2019년)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표 9]와 같이 총 49,758건이다.

[표 9] 최근 5년간 건산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록말소	7,516	1,387	1,956	1,935	1,262	976
영업정지	12,392	3,311	2,288	2,595	2,278	1,920
과징금	724	82	141	249	131	121
과태료	29,126	4,302	4,629	7,035	8,299	4,861
합계	49,758	9,082	9,014	11,814	11,970	7,878

자료: **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1)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불합리

건산법 제82조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이에 같음하여 과징금(1억 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산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관련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한 때에

14) 건산법 제91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는 영업정지만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채 영업활동을 계속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아 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더러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은 행정처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로 변경하여 처분하도록 관계법령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 과징금 미납 시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처분할 수 있는 규정 사례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4항에 따르면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
- 「화장품법」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
- 「의료기기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

따라서 국토부는 건산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업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형평성과 실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로 변경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건산법 제82조에 건산법 등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징금을 기한 내 (30일 이내¹⁵)에 납부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로 변경처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표본으로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신 부과된 과징금의 미납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0년 9월 현재 189건이 미납 중이었고, 서울특별시 등은 과징금 납부 독촉 등 체납절차¹⁶⁾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사업자는 계속하여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채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징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건설공사를 수주한 사례 】

- 서울특별시가 2017. 10. 10.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여 과징금(8,415,000원)을 부과한 (주)□□건설의 경우 3년 이 지난 2021년 2월 현재까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¹⁷⁾에서 “ㄴ 신축공사” 등 15건(총 계약금액 9,070백만 원)을 수주
- 경기도가 2013. 11. 26.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여 과징금(8,070,000원)을 부과한 △△건설(주)의 경우 2년 7개월 동안 과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¹⁸⁾에서 “ㄷ 신축공사” 등 42건(총 계약금액 53,112백만 원)을 수주한 후 2016. 6. 13. 폐업되어 결손처분
- 경기도가 2009. 4. 13.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여 과징금(54,000,000원)을 부과하고 일괄 하도급으로 과징금(79,670,000원)을 부과한 ▷▷건설(주)의 경우 과징금을 2년 2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ㄹ 증축공사” 등 6건(6,821백만 원)을 수주한 후 2011. 6. 30. 폐업되어 결손처분

이와 같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업자가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한 다른 건설사업자와 비교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과 실효성 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15) 「지방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음

16) 건산법 제82조 제3항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음

17) 2017. 9. 14. 4,700,000원을 납부하여 미납액은 3,715,000원임

18) 2014. 2. 27. 3,000,000원, 2015. 5. 28. 2,000,000원을 납부하여 미납액은 3,070,000원임

2) 불공정 행위(부당특약)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부적정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부당특약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암묵적으로 강요하여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 등이 조사한 하도급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 중 부당특약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불공정 실태 조사 결과 】

- 2020년 **협회¹⁹⁾가 수행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업체 780개 중 114개 (14.6%)가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특약조항²⁰⁾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하는 등 하도급 계약 시 독소조항인 불공정 특약을 추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특약 조항 사례유무 추이



- 2020년 **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²¹⁾이 공동으로 수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 중 부당특약의 체감도 점수(점수가 낮을수록 불공정 거래 빈도가 높음)가 가장 낮았고 수급인은 분쟁 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문서에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설정

연도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²²⁾

연도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	보복 조치 금지
2020	68.2	71.9	78.5	69.0	68.4	76.6
2019	62.9	68.2	77.7	65.0	63.2	75.0

19) 건설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한 비용 전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비용 전가

21) 2006년 구 건설교통부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은 **협회 산하 재단법인

22) 조사대상 항목별로 불공정 거래의 발생빈도를 5단계(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로 구분하고 (전혀 없다 응답 수×100+별로 없다 응답 수×75+보통 응답 수×50+다소 있다 응답 수×25+매우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건설법 제38조, 제81조 및 제82조에 행정처분기관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특약을 강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기관이 부당특약 강요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진술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이 필요하지만,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고, 수급인과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수급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등 현실적으로 수급인의 강요에 의해 부당특약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건설공사 등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운영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벌금 부과 등의 처분²³⁾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하도급 계약 시 수급인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인의 강요 여부에 관계 없이 부당특약을 설정한 불공정 행위 자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건설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유형별로 부당특약을 규정하고, 이와 같은 부당특약을 수급인이 강요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82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많다 응답 수×0)/전체 응답수'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하며 체감도 점수가 낮을수록 불공정거래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의3 및 제30조에 규정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중 부당특약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부당특약 행정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당초 불공정 행위(부당특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부당특약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강요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행정처분기관(서울특별시)이 패소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 부당특약 강요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행정처분기관이 패소한 사례 】

- 서울특별시가 2017. 8. 2. “□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주식회사 ▽▽)이 특기시방서에 모든 재해발생책임 등을 하수급인(주식회사 ◁▷건설)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하여 건설법 시행령 제34조의8에 따른 불공정 행위(부당특약) 금지를 위반한 주식회사 다짐에 과징금(4,000만 원) 부과
- 그 후 주식회사 ▽▽은 2017. 11. 10.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2018. 8. 23. 선고) 및 항소심(2019. 2. 21. 선고)에서 부당한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으나 소송과정에서 하수급인(주식회사 ◁▷건설)이 부당특약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반복²⁴⁾하여 주식회사 ▽▽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가 패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와 같이 건설법 시행령 제34조의8에서 규정한 부당특약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처분기관이 ‘강요’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특성상 약자인 하수급인도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

24) 당초 주식회사 ◁▷건설은 서울특별시와의 유선 통화에서 부당특약을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소송과정에서는 강요받은 것은 아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인의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수급인의 강요 여부와 관련 없이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업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로 변경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② 건설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급인의 강요 여부에 관련 없이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다 소방시설업에 대한 부실 벌점 부과기준 미비

소방청은 2017. 1. 28. 소방시설공사의 설계·감리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업체(설계업자, 감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등과 이에 종사하는 소방기술자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의 과정에서 건설기술용역,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등과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법적 근거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건설공사와 같이 소방시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업자와 소방기술자에 대한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소방시설

공사법』에 부실 측정 및 부실 벌점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소방시설업(설계·감리·공사) 중 소방시설공사업을 부실 벌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소방청은 2017. 1. 28. 「소방시설공사법」에 소방시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업자(설계·감리·공사)와 소방기술자에 대한 부실 측정 및 부실 벌점 부과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소방시설공사 중 설계 또는 감리용역의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및 제6조 제1항에 부실 측정, 부실 벌점 부과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감점(최대 5점)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또는 감리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소방시설업 중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관련 소방기술자는 부실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소방시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와 관련 소방기술자에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할 경우 행정심판 등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관련 소방기술자는 부실 벌점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는 실정이다.

【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 벌점 부과를 취소한 사례 】

-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17. 서울특별시가 상위 법률(「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 부과한 부실 벌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실 벌점 부과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고, 구 부패예방감시단은 2019. 8. 1. “법적 근거 없이 설계, 감리 부분에만 운영하던 벌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시공 부분에 대한 벌점 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 필요가 있음”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송부

관계기관 의견 소방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부실 벌점 부과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전문가 연구용역 및 규제영향분석(편익분석) 등을 거쳐 상위 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부실 벌점 부과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와 소방기술자에게 적용하는 부실 측정 및 부실 벌점 부과기준 등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근거를 두어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3. 행정처분 이행 분야

3.1. 실태

건산법 제9조와 건진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업, 건설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표 10]과 같이 기술능력, 자본금 등 필요한 등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그림 7]과 같이 ㉠㉠협회 등의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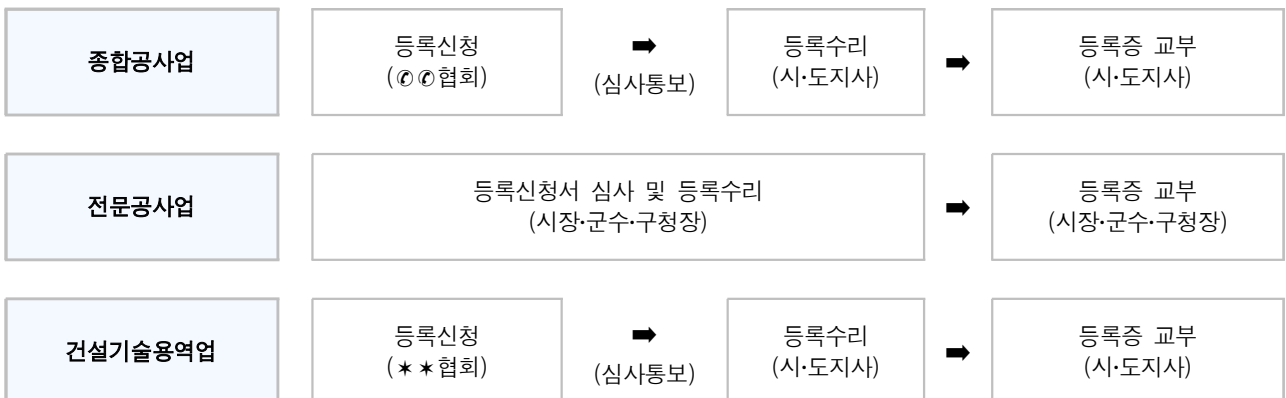
[표 10]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분야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법인	개인	
건설업	종합 공사업	토목공사업	6	500	1,000	사무실 (면적기준 없음) * 일부 업종은 시설 및 장비 필요
		건축공사업	5	350	700	
		토목건축공사업	11	850	1,700	
	전문공사업(실내건축 등 29종)		1~5	150~700	150~1,400	
건설기술 용역업	종합		21	200		
	설계·사업 관리	일반	15	200		
		설계 등 용역	5	50		
		건설사업관리	10	150		

자료: 건산법, 건진법 관련 내용 재구성

[그림 7]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절차



자료: 건산법, 건진법 관련 내용 재구성

그리고 시·도지사 등은 국토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자본금, 기술인력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통보받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거쳐 건산법, 건진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건산법 제49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고,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 절차는 [그림 8]과 같으며, 2019년의 경우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2,046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133건, 영업정지 1,443건, 기타 470건) 하였다.

[그림 8] 건설업 실태조사 절차



자료: 건산법, 건진법 관련 내용 재구성

3. 2. 문제점

- ▶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 부당 감경
- ▶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태만
- ▶ 건설공사 현장 점검 벌점총괄표 누락 등 벌점 종합관리 업무 미흡
- ▶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린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 지연
- ▶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건설사업자 미고발, 불공정 행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 지연

가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업무 부적정

인천광역시는 건산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라 국토부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건산법을 위반한 건설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건산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되, [표 11]과 같이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11] 영업정지 기간 감경 및 가중사유 기준

구분	사유	기준
감경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별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8시간 이상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최대 15일)	
가중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 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자료: 건산법 관련 내용 재구성

따라서 인천광역시 건설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후 행정처분 전에 시정을 완료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법정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사유별 1개월씩 최대 2개월)하되, 시정완료의 경우에는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감경해 주어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8시간 이상의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근거로 감경(최대 15일)을 요구한 경우에는 최초 행정처분 시 감경해 준 기간(최대 2개월)에 교육이수 감경을 합한 전체 감경기간이 법정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않을 때만 추가로 감경해 주어야 한다.

1) 감경 사유가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기간 부당 감경

인천광역시는 2018. 10. 1.부터 2020. 7. 9.까지 국토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건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통보받은 주식회사 ◇◇ 등 총 19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관련

그런데 인천광역시 ♥국 ♠과 C(현 ♣과)은 2018. 10. 1. 국토부로부터 2017년 기준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이라 한다)의 자본금 미달이 의심된다고 통보받은 후 같은 해 11. 2. 자본금 총계가 326,206,312원으로 정당한 자본금 5억 원²⁵⁾에 미달된 것을 확인하고서도 위 건설사업자로부터 미달된 등록기준(자본금)을 보완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받지 아니한 채²⁶⁾ 구두로 자본상

25) 구 건산법 시행령(2018.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법인의 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500,000,000원 이상으로 규정

26) C는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종료일 30일 이내에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미달된 등록기준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발급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구두로 재무상태가 괜찮다는 확인만 한 것이라고 주장

태가 좋다는 말만 들은 후 근거 없이 ‘시정완료 감경(1개월)’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부과” 문서를 기안하여 건설지원담당 E에게 결재를 올렸다.

그리고 E는 C로부터 결재를 요청받은 건설업 행정처분 문서의 첨부서류로서 행정처분 사유와 감경 적용 내용 등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조서”에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첨부서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사유에 대한 근거 등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였고, 과장 F도 E만 믿고 최종 결재(2018. 11. 7.)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만큼 부당하게 감경해 주는 등 [표 12]와 같이 8개 건설사업자²⁷⁾의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씩 부당하게 감경해 주었다.

27)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8개 건설사업자 중 2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추가 행정처분 없음)하였고, 3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스스로 폐업하였으며, 3개 건설사업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 인천광역시에서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여 등록말소 처분하였음

[표 12] 시정완료 감경을 적용한 건설사업자 현황¹⁾

(단위: 개월)

연 번	건설사업자명	법령 위반 내용	처분일	영업정지 기간			비고	관련자		
				법정 기간	실제 처분	정당 처분 ²⁾		담당자	담당	과장
1	◇◇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2018. 11. 7.	6	4	5	영업정지 기간 중 보완 완료	C	E	F
2	-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2020. 7. 24.	6	4	5	영업정지 처분 이후 폐업(2020. 12. 22.)	C	E	G
3	-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2020. 7. 24.	6	4	5	영업정지 처분 이후 폐업(2021. 1. 5.)	C	E	G
4	(주)☆☆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외 1)	2020. 8. 25.	6	4	5	영업정지 1개월 추가 처분(2020. 12. 24.) 및 영업정지 기간 중 미보완→등록말소 (2021. 3. 31.)	C	E	G
5	-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2020. 8. 26.	6	4	5	영업정지 1개월 추가 처분(2020. 12. 22.) 및 영업정지 기간 중 미보완→등록말소 (2021. 3. 31.)	C	E	G
6	-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2020. 8. 27.	6	4	5		C	E	G
7	-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2020. 9. 17.	6	4	5	영업정지 1개월 추가 처분(2020. 12. 22.) 및 영업정지 기간 중 보완 완료	C	E	G
8	-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2020. 9. 18.	6	4	5	영업정지 처분 이후 폐업(2020. 12. 15.)	C	E	G

주: 1. 인천광역시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총 19개 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에 미달한 ◇◇ 등 17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보완서류(시정완료)를 제출받지 않고 1개월씩 부당하게 감경해 주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감사기간 중 ●●건설(주), (주)■■■건설, (주)▲▲건설, (주)▶▶건설, (주)▼▼건설, (주)◀◀, (주)◆◆건설, ♥♥건설(주) 및 (주)♠♠건설의 경우 행정처분일 이전에 등록기준이 보완된 사실이 소명되어 부당 처리 건수에서 제외

2. 정당 처분 기간은 법정 기간에서 부당하게 감경(시정완료 감경)하여 준 1개월을 제외한 기간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C는 2020. 12. 7.부터 감사원에서 건산법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자 이와 같이 부당하게 감경하여 준 총 8개 건설사업자 중 2020. 12. 25. 현재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 등 4개([표 12] 연번 4~7)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경을 취소하는 것으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 알림” 문서를 기안하여 건설관리담당 E 및 ♠과장 G(건설행정담당 H 대결)의 결재를 받아 2020. 12. 22. 및 같은 해 12. 24. 영업정

지 처분을 변경(감경 1개월 취소)하였다.

그 결과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에게 정당한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감경해 줌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특혜를 주었다.

나) 불법 하도급 건설사업자 관련

C는 국토부로부터 건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업자를 통보받은 후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I)로부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건설은 2018. 12. 14. 실시한 청문에서 불법 하도급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내용을 시정완료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C는 위반내용의 시정이 불가능하여 감경대상이 아닌데도 근거 없이 ‘시정완료 감경(1개월)’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부과” 문서를 기안하여 건설관리담당 E에게 결재를 올렸다.

그리고 E와 과장 F는 “가)항”과 같이 행정처분 부과 문서에 나와 있는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 사유와 근거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2018. 12. 20.)하여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을 부당하게 감경해 주었다.

그 결과 “가)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다) 직접 시공의무 위반 건설사업자 관련

C는 국토부로부터 건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업자를 통보받은 후 “★★(주) 비 증축공사”²⁸⁾의 수급자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J)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K)과 하도급(철골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산법 시행령 제30

28) 2018. 9. 12. ★★(주)와 “★★(주) 비 증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201백만 원)을 맺은 (주)○○건설은 2018. 11. 10. (주)■■(과 철골공사 하도급 계약(계약금액 129백만 원)을 맺음

조의2 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비율(50%) 위반사실²⁹⁾을 확인하고 2019. 5. 7. 주식회사 ○○건설 소속 직원으로부터 대표이사(J)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겠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

그런데 C는 근거 없이 ‘시정완료 감경(1개월)’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건설업 직접시공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주)○○건설]” 문서를 기안하여 건설관리담당 L에게 결재를 올렸다.

그리고 L 및 건설심사과장 M은 “가)항”과 같이 행정처분 부과 문서에 나와 있는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 사유와 근거가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2019. 5. 8.)하여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을 부당하게 감경해 주었다.

그 결과 “가)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 영업정지 기간의 최대 감경기준을 초과하여 부당 감경

인천광역시는 [표 13]과 같이 2017. 5. 18.부터 2019. 5. 2.까지 건산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N) 등 11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법정 최대 감경기간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만큼을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행정처분 이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이수(8시간)하였더라도 추가로 감경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29)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등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건설은 도급받은 공사 중 64%를 하도급하여 직접시공 의무비율(50% 이상)에 미달한 36%만 직접 시공

[표 13] 법정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감경받은 건설사업자의 추가 감경 등 명세

(단위: 개월)

연번	건설사업자명	변경 처분일	법령 위반 내용	영업정지 기간			관련자		
				법정 기간	당초 감경	추가 감경	담당자	담당	과장
1	㈜◆◆건설	2019. 4. 22.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요구	2	1	0.5 (15일)	C	L	M
2	㈜△△건설	2019. 5. 2.	안전점검 미이행 또는 허위로 한 경우	2	1	0.33 (10일)	C	L	M
3	-	2018. 7. 3.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요구	2	1	0.5 (15일)	P	R	S
4	-	2018. 7. 9.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미달 또는 품질이하 불량자재 사용	2	1	0.5 (15일)	P	R	S
5	-	2018. 2. 1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발령	2	1	0.5 (15일)	P	R	S
6	-	2018. 1. 18.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발령	2	1	0.5 (15일)	P	R	S
7	-	2017. 8. 1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발령	2	1	0.5 (15일)	P	R	S
8	-	2017. 8. 10.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발령	2	1	0.5 (15일)	P	R	S
9	-	2017. 6. 2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발령	2	1	0.5 (15일)	P	R	T
10	-	2017. 6. 21.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미달 또는 품질이하 불량자재 사용	2	1	0.5 (15일)	P	R	T
11	-	2017. 5. 18.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미달 또는 품질이하 불량자재 사용	2	1	0.5 (15일)	P	R	U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C는 2019. 4. 18. 및 같은 해 5. 2.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처분 (1개월)한 주식회사 ◆◆건설 및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O)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수료하였다며 감경을 요구하자, 당초 최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만큼을 감경(2개월→1개월)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감경해 줄 수는 없는데도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당초 처분한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을 0.5개월로 변경 처분(감경 0.5개월)하는 것으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 문서를 기안(각각 2019. 4. 22. 및 5. 2.)하여 건설관리담당 L에게 결재를 올렸다.

그리고 L은 당초 법정 최대 감경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영업정지 기간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지 직접 검토하거나 C에게 관계법령에 적법한지 등을 재검토하

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C로부터 “교육감경은 가능합니다”라는 말만 듣고 그대로 결재하였고, ♣과장 M도 추가 감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최종 결재하여 위 두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기간 0.5개월³⁰⁾을 부당하게 추가로 감경해 주었다.

또한, ♣과 P³¹⁾(현 ◎국)은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Q)가 영업정지 처분(2018. 6. 21.)을 받은 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수료하였다며 감경을 요구하자, 2018. 7. 3. 당초 최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만큼을 감경(2개월→1개월)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감경해 줄 수는 없는데도 근거 없이 추가로 감경해 줄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표 13]과 같이 당초 처분한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을 0.5개월로 변경 처분(감경 0.5개월)하는 것으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 문서를 기안(2018. 7. 3.)하는 등 총 9개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추가로 감경해 주는 문서를 기안하여 건설관리담당 R에게 결재를 올렸다.

그리고 R은 P이 결재를 올린 영업정지 기간의 추가 감경이 적정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여 그대로 결재하였고, ♣과장 S 외 2명(T, U)도 추가 감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최종 결재하여 총 9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기간 0.5개월을 부당하게 추가로 감경해 주었다.

그 결과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에게 처분한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추가로 감경해 줌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특혜를 주었다.

관계기관 의견 인천광역시는 감사결과 검토사항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30) 건설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마.4)가)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의 대표가 교육을 받은 경우 15일,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고, (주)△△건설의 경우 임원 2명이 교육(8시간)을 받아 10일을 감경함

31) 2021. 6. 30. 정년퇴직

대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건설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업무를 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감경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간보다 과소하게 처분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은

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 및 “E”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개별처분요구사항명세 1번 참조】

②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2020. 12. 22. 및 같은 해 12. 24.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감경(시정완료 감경)한 주식회사 ☆☆ 등 4개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경을 취소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알려드리니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통보(시정완료)]

③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감경해 주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④ 관련자(L, R)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나 법령 위반(등록기준 미달 등) 업체 행정처분 업무 부적정

서울특별시는 건설법 제91조 및 건진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및 건설기술 용역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1)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업무 부적정

건설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 관리규정」(국토부 예규) 제7장 제2조 나항 제3호 및 다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자료는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가) 등록기준 미보완 건설사업자 관련

그런데 서울특별시 ●실 ■과 V는 2019. 8. 13.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한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W)에 대해 ① ‘미달사항은 처분 종료일까지 반

드시 보완하고 미보완 시 등록이 말소되며’, ② ‘자본금 미달사항은 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을 받고’, ③ ‘미달사항을 보완한 경우 입증서류를 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과)로 제출한 후 담당자에게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설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2019. 9. 9.~2020. 2. 8.) 통지서”를 작성하여 *팀장 X 및 ■과장 Y의 결재를 받아 주식회사 ■■■건설에 통지하고서도 위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달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³²⁾하지 않았는데도 등록기준 보완 여부 확인을 위해 공시송달을 하려면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반송확인 등 절차가 길고, 대형건설업체가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건 등을 처리해야 된다는 사유로 처분 종료일(2020. 2. 8.)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표 14]와 같이 7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32) V가 직접 기안하여 주식회사 ■■■건설에 통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에 따르면, 자본금 미달사항은 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을 받은 후 입증서류를 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하도록 통지하였음. 따라서 위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으로 더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달사항을 보완한 입증서류를 서울특별시에 송부할 의무가 있는데 늦어도 처분 종료일까지 입증서류를 송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달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미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여 2020. 12. 14. 등록을 말소함

[표 14]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미보완한 건설사업자 처리 현황

연번	소속	직급/성명	재직기간	건설사업자명	영업정지 종료일	보완 확인 여부	행정처분	
							처분 사전통지	등록말소
1	과	V	2018. 9. 13.~ 2021. 2. 26. 현재	주○○○건설	2020. 2. 8.	미확인	2020. 12. 14.	2020. 12. 14.
				□□□□건설주	2020. 3. 30.	미확인	“해당 없음”(보완 완료)	
				-	2020. 5. 1.	미확인	2021. 3. 9.	2021. 4. 19.
				주□□□□건설	2020. 9. 21.	미확인	“해당 없음”(보완 완료)	
				-	2020. 9. 30.	미확인	2021. 1. 22.	2021. 2. 10.
				-	2020. 9. 30.	미확인	2021. 4. 5.	2021. 4. 12.
				-	2020. 9. 30.	미확인	2021. 1. 22.	2021. 2. 10.
2	과	Z	2014. 8. 1.~ 2020. 5. 31.	-	2020. 1. 31.	미확인	2021. 3. 10.	2021. 3. 29.
				-	2020. 2. 29.	미확인	2020. 12. 9.	2020. 12. 29.
				-	2020. 3. 31.	미확인	2020. 12. 9.	2020. 12. 29.
				-	2020. 3. 31.	미확인	2021. 1. 19.	2021. 4. 5.
3	과	AA ¹⁾	2020. 6. 1.~ 2021. 2. 26. 현재	-	2020. 1. 31.	미확인	2021. 3. 10.	2021. 3. 29.
				-	2020. 2. 29.	미확인	2020. 12. 9.	2020. 12. 29.
				-	2020. 3. 31.	미확인	2020. 12. 9.	2020. 12. 29.
				-	2020. 3. 31.	미확인	2021. 1. 19.	2021. 4. 5.
				-	2020. 9. 9.	미확인	2020. 12. 9.	2020. 12. 29.
				-	2020. 9. 9.	미확인	2020. 12. 9.	2020. 12. 29.
4	과	AB	2020. 1. 17.~ 2021. 2. 26. 현재	□□□□건설주	2020. 3. 1.	미확인	“해당 없음”(보완 완료)	
				-	2020. 5. 31.	미확인	2021. 2. 1.	2020. 3. 2.
				-	2020. 5. 31.	미확인	-	2021. 2. 27.
5	과	AC	2018. 1. 18.~ 2021. 1. 17.	주□□□□건설	2020. 6. 19.	미확인	2020. 9. 15.	2020. 12. 1.
				주□□□□건설	2020. 8. 31.	미확인	2020. 11. 2.	2020. 12. 1.
				▲▲▲▲건설주	2020. 9. 30.	미확인	2020. 11. 2.	2020. 12. 1.
				-	2020. 9. 30.	미확인	2021. 1. 5.	2021. 2. 18.
6	과	AD ²⁾	2019. 3. 4.~ 2021. 2. 26. 현재	주▲▲	2020. 9. 19.	미확인	2020. 12. 4.	2021. 1. 21.
				●●●●건설주	2020. 9. 19.	미확인	2020. 11. 6.	2020. 12. 10.

주: 1. AA가 담당한 6건 중 4건은 2020. 6. 1. Z로부터 인계받은 것임
 2. AD는 (주)▲▲의 경우 영업정지 종료일을 2020. 9. 19.(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 영업정지, 2020. 4. 20.~2020. 9. 19.)이 아닌 2020. 11. 4.(실태조사 자료 미보고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등록말소 처분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후 V는 2020. 12. 7.부터 감사원에서 건산법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자, 그때서야 위 7개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그중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5개³³⁾ 건설사업

자에 대해 행정처분(등록말소)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등을 진행한 후 최대 11개월이나 늦게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V 등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 6명은 [표 14]와 같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처분한 총 22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뒤늦게 미달된 등록기준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총 22개 건설사업자 중 19개³⁴⁾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말소³⁵⁾)하였다.

나) 법령 위반(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사업자 관련

서울특별시 2018. 1. 25.부터 2020. 9. 30.까지 국토부 등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총 216건을 통보받아 행정처분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V 등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 5명은 행정처분 대상 216건 중 114건은 2020. 12. 7. 감사 착수 이전에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02건에 대하여는 현안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최대 32개월³⁶⁾이 지난 2020. 12. 7.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뒤늦게 처분 사전통보를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21. 4. 23. 현재 [표 15]와 같이 위 102건 중 67건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뒤

33) 7개 건설사업자 중 ■■■건설(주) 및 (주)■■■건설의 경우 V가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의 보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감사 시 영업정지 기간 중에 미달된 등록기준이 보완된 사실이 소명됨

34) 총 22개 건설사업자 중 ■■■건설(주), ■■■건설 및 ■■■건설(주)는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들이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의 보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감사 시 영업정지 기간 중에 미달된 등록기준이 보완된 사실이 소명됨

35) 총 19개 건설사업자 중 (주)■■■건설, (주)■■■건설 및 ▲▲▲건설(주)(업무 담당자: AC 및 (주)▲▲, ●●●건설(주)(업무 담당자: AD)의 경우 행정처분 업무담당자들이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의 보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착수(2020. 12. 7.) 이전인 2020. 9. 15.부터 같은 해 12. 4.까지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등 절차를 진행한 후 등록을 말소(2020. 12. 1.~2021. 2. 18.)

36) ●●●(주)의 경우 2018. 4. 16. 국토부로부터 법령 위반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20. 12. 7.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하다가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중인 같은 해 12. 18. 처분 사전통보 등을 진행한 후 2021. 2. 27. 과징금을 부과함

행정처분을 완료(감사기간 중 35건, 감사종료 이후 32건)하였고, 나머지 35건은 향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표 15]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현황

소속	업무 담당자	근무기간	감사 이후 처리 현황				지연 기간 ^{주)} (2021. 4. 23. 기준)
			소계	처분완료		미처분	
				감사 중	감사 후		
	계	-	102	35	32	35	-
■과	V	2018. 9. 13.~ 2021. 2. 26. 현재	74	17	25	32	최소 1개월, 최대 32개월
■과	AA	2020. 6. 1.~ 2021. 2. 26. 현재	9	6	1	2	최소 2개월, 최대 9개월
■과	AB	2020. 1. 17.~ 2021. 2. 26. 현재	11	9	2	0	최소 6개월, 최대 20개월
■과	AC	2018. 1. 18.~ 2021. 1. 17.	2	1	0	1	최소 1개월, 최대 1개월
■과	AD	2019. 3. 4.~ 2021. 2. 26. 현재	6	2	4	0	최소 1.5개월, 최대 30개월

주: V의 최대 지연기간 32개월 중 업무 담당 기간은 28개월, AB의 최대 지연기간 20개월 중 업무 담당 기간은 7개월, AD의 최대 지연기간 30개월 중 업무 담당 기간은 15개월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2020. 12. 7.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총 102건 중 74건의 업무 담당자인 V는 현안업무 처리 등 업무가 과중하고, 일부 건설사업자의 경우 법령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최대 32개월이 지나도록 처분 사전통보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감사 착수 이후에서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2021. 4. 23. 현재 위 74건 중 42건은 행정처분을 완료(감사기간 중 17건, 감사종료 이후 25건)하였고, 나머지 32건은 향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위 관서 *팀장 X는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 업무의 실무 책임자 및 중간 검토자로서, 결재권자인 ■과장 Y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따라서 X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처분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보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지시하여야 했다.

또한 X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장기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을 경우, 조속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X는 “가)항”의 내용과 같이 V 등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 6명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총 22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말소됨’을 통지하고서도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게다가 X는 “나)항”의 내용과 같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 총 216건 중 102건에 대하여도 5명의 업무 담당자들이 행정처분 외 현안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장기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 업무의 실무 책임자이면서 중간 검토자로서 행정처분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할 건설사업자(무자격)가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 등을 일실했다.

2)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업무 부적정

건진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설계·사업관리 등 전문분야별로 등록요건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진법 제3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영업정지(3개월), 2차 영업정지(6개월) 및 3차 영업정지(12개월) 순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진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등록기준 미달로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2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으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설계·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지체 없이 1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2차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 2차 처분 종료일까지도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3차 영업정지와 함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 실 AE(현 ◎국)은 2016. 7. 20. * * 협회로부터 주식 회사 ◑ ◑ (대표이사 AF, 이하 “◑ ◑”라 한다)가 기술인력의 퇴사(2016. 5. 31.)로 등록 기준에 미달(발생일로부터 50일이 지난 2016. 7. 20.까지 미보완)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받아 다음 날 확인하고서도 위 문서를 18개월 이상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관계 서류철에 편철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2018. 2. 6.에서야 청문통지 등 행

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2. 27. “행정처분 결과 통보” 문서를 기안하고 ☼ 팀장 AG³⁷⁾ 및 ☼ 관 AH의 결재를 받아 1차 영업정지(2018. 3. 10.~2018. 6. 9.) 처분을 하였다.

한편, AE는 [표 16]과 같이 ◐◐를 제외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AI, 이하 “▲▲”이라 한다) 등 3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협회로부터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대 46일 만에 청문 등을 거쳐 1차 영업정지(3개월) 처분을 모두 완료하였다.³⁸⁾

[표 16]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현황

연번	업체명	1차 영업정지	등록기준 보완 여부	2차 영업정지	정당처리 시 행정처분(감사원 예상)
1	◐◐	2018. 3. 10.~ 6. 9. ※ 18개월 방치	미확인	2021. 1. 1.~ 6. 30. ※ 19개월 방치	■ 2차 영업정지(6개월: 2018. 6. 10.~2018. 12. 9.) ■ 3차 영업정지(12개월: 2018. 12. 10.~2019. 12. 9.) →'18. 12. 10. 현재 등록취소 대상
2	▲▲	2019. 9. 1.~ 11. 30.	미확인	2021. 1. 1.~ 3. 31. ※ 13개월 방치	■ 2차 영업정지(6개월: 2019. 12. 1.~2020. 5. 31.) →2019. 12. 16. 미달사항 보완(3차 영업정지 미대상) ※ 2차 영업정지 시 감경(6개월→3개월, 미달사항 보완)
3	㈜▲▲	2019. 9. 1.~ 11. 30.	미확인	2020. 3. 5.~ 9. 4. ※ 3개월 방치	■ 2차 영업정지(6개월: 2019. 12. 1.~2020. 5. 31.) ■ 3차 영업정지(12개월: 2020. 6. 1.~2021. 5. 31.) →2020. 6. 1. 현재 등록취소 대상(2020. 11. 23. 폐업)
4	(유)▼▼	2019. 10. 1.~ 12. 31.	미확인	2021. 1. 1.~ 6. 30. ※ 12개월 방치	■ 2차 영업정지(6개월: 2020. 1. 1.~2020. 6. 30.) ■ 3차 영업정지(12개월: 2020. 7. 1.~2021. 6. 30.) →2020. 7. 1. 현재 등록취소 대상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게다가 AE는 이와 같이 등록기준 미달로 1차 영업정지를 처분하였던 위 4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1차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 **협회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다시 통보하여 줄 것으로 알았다는 사유로 처분 종료일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37) ◐ 실 ☼ 팀장 AG는 2015. 1. 12.부터 2020. 6. 30.까지 AE의 상급자로서 AE가 기안한 행정처분 문서에 검토(결재)를 하였고, 2020. 12. 31. 정년퇴직

38) ▲▲은 2019. 7. 10. 통보받아 같은 해 8. 26. 영업정지 처분, (주)▲▲의 경우 2019. 7. 31. 통보받아 같은 해 8. 30. 영업정지 처분, (유)▼▼의 경우 2019. 8. 21. 통보받아 같은 해 9. 19. 영업정지 처분

두다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AJ)의 경우 처분 종료일(2019. 11. 30.)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2019. 12. 1.부터 2020. 5. 31.까지 2차 영업정지 대상인데도 3개월 늦은 2020. 2. 21.에서야 “건설기술용역업자 행정처분 청문결과 보고” 문서를 기안하고 ●팀장 AG 및 ●관 AK의 결재를 받아 뒤늦게 2차 영업정지(6개월: 2020. 3. 5.~2020. 9. 4.) 처분을 하였다.

이후에도 AE는 18개월 이상 지연하여 1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던 ●● 등 3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19개월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2020. 11. 13. 감사원이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실태를 점검³⁹⁾하자, 그때서야 서둘러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중인 2020. 12. 29. 2차 영업정지를 일괄 처분하였다.⁴⁰⁾

그 결과 AE는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1차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하게 2차 및 3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 ●● 등 3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등록취소 대상(최근 5년간 영업정지 3회)인데도 이보다 경미한 영업정지 처분⁴¹⁾만 받게 되는 등 법령 위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

39) 자료수집 기간: 2020. 10. 12.~11. 27.(25일간), 실지감사 기간: 2020. 12. 7.~2021. 2. 26.(20일간)

40) 2020. 12. 29. AE이 “행정처분 결과 통보(●●)” 문서를 기안하고 *팀장 AL 및 ●관 AK가 결재

41) ▲▲의 경우, AE가 1차 영업정지(3개월: 2019. 9. 1.~2019. 11. 30.) 처분을 한 후 처분 종료일(2019. 11. 30.)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2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 2019. 12. 1.부터 2020. 5. 31.까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AE는 행정처분 업무를 13개월 동안 방치(2019. 12. 1.~2020. 12. 28.)하였다가 2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됨으로써 ▲▲은 AE가 방치하였던 기간 중에 미달사항을 보완(2019. 12. 16.)하여 2차 영업정지 처분 시 법정 영업정지 기간 6개월의 2분의 1인 3개월을 감경받게 됨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최근 3년간 등록말소(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처리 건수가 2,064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달라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조치하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①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V 및 X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E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징계)

【개별처분요구사항 명세 2번, 3번 참조】

② 법령을 위반한 116개 건설사업자⁴²⁾와 4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⁴³⁾에 대해 조속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등록말소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며(통보)

③ 앞으로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④ 관련자에(AA, AD, AC, AB, Z)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2) 등록말소 대상 ㈜□□건설 등 14개(소명완료된 3개 및 감사 개시일 이전 처리된 5개 제외)와 등록기준에 미달한 ●●㈜ 등 102개 건설사업자

43) 등록기준에 미달한 ●●, ▲▲, (주)▲▲, (유)▼▼

다 건설공사 부실 수행 업체에 대한 벌점 종합관리 부적정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진법 제53조에 따라 발주청 등⁴⁴⁾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등⁴⁵⁾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센터⁴⁶⁾에 위탁한 후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발주청 등은 건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벌점 총괄표⁴⁷⁾를 반기별로 **센터에 통보하고 있고, 최근 2년간(2018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총 1,078개 기관(누적)이 [표 17]과 같이 총 17,255건의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한 후 벌점 총괄표를 작성하여 **센터에 통보하였다.

[표 17] 벌점 총괄표 등 통보 현황

(단위: 개, 건)

연도	반기	벌점 총괄표 통보기관 수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	
		전체	벌점 부과	전체	벌점 부과
2018년	하	233	54	3,392	249
2019년	상	260	59	3,588	289
2019년	하	297	58	5,002	332
2020년	상	288	53	5,273	336
계		1,078	224	17,255	1,206
평균		270	56	4,314	302

자료: **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44) 국토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

45)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기술인 등

46) 건진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 제2020-1177호)에 따라 **센터에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

47) 건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37호 서식] 및 [별지 제38호 서식]

건진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발주청 등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여 시정명령⁴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르면 발주청 등은 해당 반기에 점검을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해당 업체별로 업무 영역(건설업, 건설기술용역업 등)을 구분하여 점검수(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점검수를 기재)를 집계·작성한 벌점 총괄표를 **센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센터는 발주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벌점 총괄표의 내용을 벌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건설사업자 등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그림 9]와 같이 건설사업자 등의 반기별 평균벌점은 반기별 벌점 합계를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점검수가 부정확할 경우 반기별 평균벌점 등이 잘못 산정되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48) 건진법 시행령(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르면 벌점의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부과

[그림 9] 벌점 통보 등 업무 절차와 벌점 산정방법



주: 건진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 산정
자료: 건진법 시행령 관련 내용 재구성

그리고 누계 평균벌점은 [표 18]과 같이 건진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등에서 감점을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되고 있다.

[표 18] 누계 평균벌점 관련 주요 불이익 활용 현황

연번	근거 법령	불이익 내용
1	건진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0.2~5점)
2	건산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별표 1]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감액(100분의 3 범위 감액)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2개월~2년)

자료: 건진법, 건산법 등 관련 내용 재구성

따라서 국토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서 건설사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되는 벌점이 정당하게 산정·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에서

통보한 별점 총괄표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누락된 점검수 등을 바로잡거나 누락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별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동안 별점 총괄표를 통보한 기관 중에서 경기도(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표본으로 최근 2년간(2018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센터에 통보한 별점 총괄표상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를 검토·확인한 결과, 광명시의 경우 35건의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서도 24건이 누락된 11건만 통보하는 등 [별표 1]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 및 통보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 합계 3,615건 중 81.7%인 2,955건을 누락하여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를 누락하여 통보한 원인을 살펴보면⁴⁹⁾ ① 여러 부서에서 소관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업무담당자들이 별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를 통보해야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② 별점을 부과받지 아니한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간헐적으로 통보해 주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별점 총괄표의 점검수 누락과 관련한 주요 사례 】

- 광명시(☞과)는 2019년 상반기 광명 재개발,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4건에 대해 감리업무실태 등을 점검하고도 별점 총괄표 통보기한(매 반기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그대로 두다가 2019. 7. 15. 별점을 부과받지 아니한 8 구역 재개발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별점 총괄표 통보를 요청하자 해당 건설공사 1건만 통보
- 광주시(☞과)는 2019년 상반기 관내 공동주택 6개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고도 별점을 부과받지 아니한 건설공사 6건 중 2019. 7. 2. 및 2019. 7. 10. ㅇ지구와 ㄷ지구 건설공사 2건(건설기술용역사업자: (주)☞, (주)☞)만 통보

49)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들로부터 누락·통보한 사유 등을 서면, 비대면 면담을 통해 확인

한편, 대부분의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를 누락하는 등 반복적으로 잘못 작성된 별점 총괄표를 **센터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른 발주청 등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토부는 발주청 등이 별점 총괄표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센터에 통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검수가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거나 누락 원인 등을 조사하여 별점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배포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부정확한 별점 총괄표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를 적용하여 건설사업자 등의 별점을 산정함에 따라 점검수가 누락된 건설사업자 등의 경우 정당한 별점보다 높게 산정⁵⁰⁾될 수 있고, 이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서 건설사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할 경우 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들이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소관 업무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내·지도하는 한편, 건설공사 현장 점검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별점 총괄표를 개선·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부정확하게 산정·관리 중인 별점에 대하여는 실제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에

50) 사례: (주)○○(건설기술용역업)의 2019년 하반기 평균별점은 0.04점(별점 0.66÷ 점검수 18.65525)인데 2019년 하반기 광주에서 누락한 ○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점검수 1을 더해 산정하면 평균별점은 0.03점으로 낮아짐

맞게 바로잡는 한편, 발주청 등의 업무담당자들이 별점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⁵¹⁾하고(통보)

② 앞으로 발주청 등이 별점 총괄표에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 등을 누락하여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1)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이후인 2021. 6. 17. 부정확하게 산정·관리 중인 별점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2021년 상반기 별점 총괄표를 제출(제출기한: 2021. 7. 31.)할 때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하반기 별점 총괄표를 검토·수정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적내용을 조치 중에 있음

라 법령 위반(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어) 업체 및 기술인 행정처분 부적정

서울국토관리청, 대전국토관리청, 익산국토관리청 등 3개 국토관리청은 [표 19]와 같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협회 등 9개⁵²⁾ 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 경력증 등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등 건산법 등을 위반한 건설기술인(95명) 및 업체⁵³⁾(122개)를 통보받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표 19] 법령 위반 건설기술인 및 건설사업자 등 통보 명세

(단위: 명, 개)

계		서울국토관리청		대전국토관리청		익산국토관리청	
건설기술인	건설사업자 등	건설기술인	건설사업자 등	건설기술인	건설사업자 등	건설기술인	건설사업자 등
95	122	43	41	2	2	50	79

자료: 3개 국토관리청 제출자료 재구성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제83조 제6호 등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21조의2 등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표 20]과 같이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 업체와 건설기술인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표 20]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어 관련 처분 법령 명세

처분대상	위반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처분기관
건설사업자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빌려줌	건산법	제82조	영업정지	시·도 ¹⁾ (등록지)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려 등록기준 충족		제83조	등록말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거짓 등록	건진법 제91조		과태료	
건설기술인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줌	건진법 제24조		업무정지	국토관리청 (거주지)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줌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자격취소	

52) **협회, 인천해양경찰청, 경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제천경찰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및 익산국토관리청

53) 건산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건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주: 1. 건설사업자는 건산법 제9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2의2까지 건설업을 등록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이 위임되어 있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2.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행정처분은 건진법 제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행정처분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자료: 건산법, 건진법 등 관련 내용 재구성

그리고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 등 업체는 건산법 제91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인은 건진법 제82조 제1항 등에 따라 국토관리청장이 영업정지(건설기술인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5항 등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이 지연되지 않게 신속히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국토관리청 등 3개 국토관리청은 **협회 등으로부터 건설기술 경력증 등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등 법령을 위반한 업체와 건설기술인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건설기술인의 경우 직접 행정처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건설사업자 등 업체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기관(시·도)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적정한 행정처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미흡

서울국토관리청은 [별표 2]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행정처분 등 처리 현황(서울국토관리청)”과 같이 2018. 4. 9.부터 2020. 2. 6.까지 **협회 등으로부터 건설사업자 등에게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려준 건설기술인 43명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건설기술인 43명 중 2018. 4. 9. 통보받은 AM 등 12명의 경우, 건진법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최장 30개월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2020. 4. 17.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업무정지 처분([별표 2] 연번 1~12)을 하였다.

그리고 AN 등 31명의 경우에는 최장 26개월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감사원 감사가 착수(2020. 12. 7.)되자 25명은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6명은 감사종료 이후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등 법령 위반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장기간 지연처리하였다.

【 대전국토관리청의 유사 사례 】

- 대전국토관리청은 2019. 2. 19.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표 21]과 같이 건설기술인 AO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는 등 건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사실을 통보받았고, 2020. 2. 6.에도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AP과 함께 다시 통보⁵⁴⁾받아 접수

【 표 21 】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어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대여자	접수일	처분사전통지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AO	2019. 2. 19.(1차), 2020. 2. 6.(2차)	2020. 2. 18.	2020. 3. 17.	업무정지
AP	2020. 2. 6.	2020. 11. 13.	2020. 12. 24.	업무정지

자료: 대전국토관리청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대전국토관리청은 AO에 대해 2차 통보를 받고 1개월이 지난 2020. 3. 17.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AP의 경우에는 AO에 대한 2차 통보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⁵⁵⁾는 사유로 9개월⁵⁶⁾ 동안 방치
- 그 후 감사원이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점검(자료수집: 2020. 10. 19.)하자 2020. 11. 13.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기간인 2020. 12. 24. 업무정지 처분

2)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 등 행정처분기관 미통보

서울국토관리청은 “1항”의 내용과 같이 **협회 등으로부터 건설기술경

54) 익산국토관리청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건을 통보받아, 소관 행정처분기관인 대전국토관리청에 통보한 것임

55) 대전국토관리청은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AO 및 AP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전자문서로 통보받았으나 AO만 재차 통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

56)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2020. 2. 6.부터 ‘감사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2020. 11. 18.까지 9개월

력증 등을 빌려준 건설기술인(43명)과 함께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린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41개)를 통보받아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별표 2]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행정처분 등 처리 현황(서울국토관리청)”과 같이 건설기술인 AQ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린 주식회사 ㉸ ㉸건설 등 6개(16건) 업체의 경우, 건산법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⁵⁷⁾는 사유로 최장 12개월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2019. 4. 12. 및 2021. 4. 9. 법령 위반 내용 등을 첨부하여 경기도 등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여 주었다.⁵⁸⁾

그리고 건설기술인 AM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린 ㉸㉸㉸건설주식회사 등 35개(45건)⁵⁹⁾ 업체의 경우에는 최장 35개월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감사원 감사가 착수(2020. 12. 7.)되자 31개(35건) 업체는 감사기간에 경기도 등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고, 나머지 6개(10건) 업체는 감사종료 이후에 통보하여 주었다.

【 익산국토관리청의 유사 사례 】

- 익산국토관리청은 2020. 1. 16.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준 건설기술인(79명)을 통보받은 후 2020. 2. 5. 4개 국토관리청⁶⁰⁾ 소관 26명을 각 국토관리청에 통보(이송)하였고, 익산국토관리청 소관 50명⁶¹⁾은 2020. 4. 13.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등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
- 그런데 [별표 3]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행정처분 등 처리 현황(익산국토관리청)”과 같이 건설기술인 AR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린 (주)㉸㉸건설 등 79개(101건) 업체에 대해서는 건산법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최장 14개월 동안 방치
- 그 후 감사원 감사가 착수(2020. 12. 7.)되자 39개(56건) 업체는 감사기간에 전라북도 등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고, 나머지 42개(45건) 업체는 감사종료 이후에 통보해 주었거나 통보해 줄 예정

57) 국토부는 2020. 10. 8. 건산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관련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항 “사목”을 신설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

58) 서울국토관리청은 2018. 4. 6.(접수: 2018. 4. 9.)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문서에 따르면 같은 해 3.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국토부(☎과)에 AS 외 14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보하였고, ☎과는 같은 해 3. 20. 통보받은 내용을 ☎과 및 **협회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국토부(☎과)가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린 업체에 대해 이미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여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

59) 35개 업체와 37개 업체(31개 업체와 6개 업체의 합)의 차이는 2개 업체[㉸㉸건설(주), ㉸㉸건설(주)]의 중복

60) 서울국토관리청, 대전국토관리청, 원주국토관리청 및 부산국토관리청이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려준 건설기술인 및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건설기술인 및 업체들과의 형평성 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대전·익산국토관리청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범죄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 법령 위반 건설기술인 및 건설사업자 등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처분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건 등은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 ① 「건설기술 진흥법」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기술인과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처리하거나 소관 행정처분기관에 위반내용을 지연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②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려준 AW 등 건설기술인 31명⁶²⁾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건설기술인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린 ◻◻◻◻건설주식회사 등 35개⁶³⁾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

건설기술인의 거주지에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정처분

6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알선자(AT, AU)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AV는 2021년 2월 감사 일 현재까지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제외함

62) 25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기간에,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이후에 행정처분을 완료함([별표 2]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행정처분 등 처리 현황(서울국토관리청)”)

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등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앞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 ① 건설기술인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린 주식회사 알앤비종합건설 등 79개⁶⁴⁾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등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소관 행정처분기관에 위반내용을 지연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3)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기간에,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이후에 행정처분기관에 통보를 완료함([별표 2]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행정처분 등 처리 현황(서울국토관리청)”)

64)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기간에 행정처분기관에 통보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이후에 행정처분기관에 통보를 완료(19개)하거나 통보할 예정(23개)([별표 3]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행정처분 등 처리 현황(익산국토관리청)”)이며, 39개와 42개를 더한 81개 업체 중 2개 업체 [(유)○○○, (유)○○○]가 중복되어 최종 79개 업체임

마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건설사업자 등 미고발

국토부는 2013. 6. 20.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요령」을 마련한 후 서울국토관리청 등 5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건산법 제9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⁶⁵⁾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제95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96조 제4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자(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요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르면 국토관리청은 신고사항에 대한 위법사실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건설사업자 처분기관(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요청하고 처분결과를 회신 받은 후 매월 5일까지 국토부에 운영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불공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가 신고받은 건산법 위반 업체 등에 대하여 걱정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65) 건산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조치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중 5개 국토관리청의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최근 3개년(2018년~2020년)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받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 13개 처분기관에 통보한 불공정하도급 1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외 고발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 결과, [표 22]와 같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불법 하도급한 우우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AX) 등 7개 건설사업자(수급자)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송송(대표자 AY) 등 7개 업체(개인 포함)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고발 조치 현황

접수 기관	수급자(대표이사)	무등록자(대표자)	처분 요청일	처분기관	조치내용		
					행정처분	고발	
						도급자	하수급자
서울 국토 관리청	-	-	2018. 4.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과징금	고발	고발
	-	-	2018. 5. 21.	음성군	영업정지	고발	고발
	♀우건설(주)(AX)	♂송(AY)	2019. 4. 17.	용인시	과징금	미고발	미고발
	-	-	2019. 12. 23.	경기도	과징금	고발	고발
	-	-	2019. 12. 18.	경기도	과징금	고발	고발
	-	-	2019. 1. 9.	경기도	과징금	고발	고발
	-	-	2020. 4. 13.	화성시	과징금	미고발	미고발
부산 국토 관리청	-	-	2018. 9. 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업정지	미고발	미고발
	-	-	2019. 9.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과징금	미고발	고발
	-	-	2020. 9. 14.	창원시 합포구	영업정지	미고발	미고발
대전 국토 관리청	-	-	2018. 7.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징금	고발	고발
	-	-	2018. 10. 30.	인천광역시	영업정지	미고발	미고발
	-	-	2020. 4.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업정지	고발	미고발
익산국토 관리청	-	-	2018. 4. 13.	예산군	영업정지	고발	고발
원주국토 관리청	-	-	2018. 10.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과징금	미고발	미고발

자료: 국토관리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국토부는 2013년부터 5개 국토관리청의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부터 매월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및 처리 건수 등 운영 실적만 전자메일로 제출받은 후 언론사와 국회의 자료 요구에 활용할 뿐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외에 고발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 누락된 경우 국토관리청 또는 행정처분을 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고발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불공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대해 그 처리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외의 고발대상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내용을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및 등록관청(시·도, 시·군·구)에 안내(공문 발송)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된 고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급자(7개 업체)와 무등록자(7개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 ①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신고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 등 법령 위반 업체 중 고발이 누락된 수급자(7개 업체)와 무등록자(7개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 행정처분기관 등으로 하여금 추가로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신고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 업체 등에 대한 고발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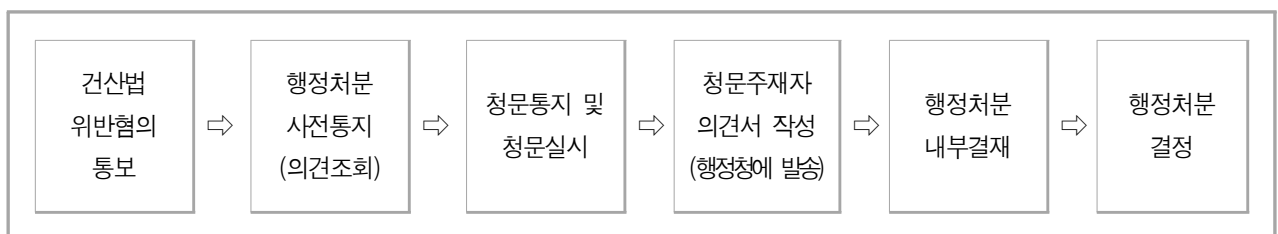
바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행정처분 업무 부적정

서울특별시는 국토부 등에서 건산법 제38조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및 제82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⁶⁶⁾ 업무를 하고 있다.

건산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에 따르면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특약 등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하 “불공정 행위”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및 제82조 등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산법 제86조 등에 따르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림 10]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0] 행정처분 절차



자료: 건산법, 「행정절차법」 관련 내용 재구성

66) 건산법 제9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등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 등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청문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국토부 등으로부터 건산법 제38조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건산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별표 4] “불공정 행위(부당 특약)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처리 현황”과 같이 2018. 7. 27.부터 같은 해 8. 30.까지 국토부 등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시 부당 특약을 설정한 7건([별표 4] 연번 1~7)의 건설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4개월 동안 그대로⁶⁷⁾ 내버려 두다가 감사원이 2020년 10월부터 건설업 행정처분 자료요구 등 점검을 시작하자 2020년 11월에서야 뒤늦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8. 8.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4건([별표 4] 연번 8~11)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2년 6개월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이번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중인 2021년 2월에서야 뒤늦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건산법 제38조 등을 위반하여 하도급 계약 시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급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장기간 지연되어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67) 서울특별시는 2018년 7월 및 8월 국토부 등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시 부당 특약 등 불공정 행위를 한 7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산법 위반내용을 통보받았고, 2018년 8월경(정확한 날짜 모름)에는 법령 위반 업체들이 스스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보받고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 절차를 미이행

행정처분이 지연된 부당 특약 관련 11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를 조속히 처리하고, 앞으로 건설산업 내 불공정 행위 근절 및 하수급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부당 특약 관련 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하수급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부당 특약 등 불공정 행위 위반 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사 건설사업관리 소홀 감리업체 등 벌점 미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하도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산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지방자치단체⁶⁸)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건설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이하 “감리업체”라 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에 대해 건진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LH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과 공사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하도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건산법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건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 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르면 발주청 등⁶⁹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가 건산법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각각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LH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68) 건산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69) 국토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한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중 LH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⁷⁰⁾까지 하도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총 730건을 점검한 결과, 2021년 2월 현재 216건은 행정처분이 완료되었고, 이 중 LH 자체감리 현장 91건을 제외한 125건 중 14건은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었다.

그런데 LH는 2018. 1. 23. 서울특별시에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청(LH)에 통보하지 않아 건설법 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J J 주식회사(대표이사 AZ, 차공사 2공구 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여 같은 해 4. 26.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처분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업체[(주) J J, (주) J J, (주) b b⁷¹⁾] 및 감리원(BA)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5] “건설사업관리 소홀 감리업체와 감리원 벌점 미부과 현황”과 같이 건설사업자가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14건에 대해 처분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⁷²⁾.

관계기관 의견 LH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확인이 어려운 사항이 많았으며 앞으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70) 2018년 이전 요청 건에 대하여는 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2018년 자료부터 분석

71) (주) J J (50%), (주) J J (30%), (주) b b (20%)의 공동도급

72) LH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730건 중 2021. 2. 26. 현재까지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나머지 514건도 향후 LH가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업체와 감리원에 대한 벌점 부과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여 감리업체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14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앞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목차

- [별표 1]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 및 통보 현황 … 78
- [별표 2]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행정처분 등 처리 현황(서울국토관리청) … 79
- [별표 3]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행정처분 등 처리 현황(익산국토관리청) … 82
- [별표 4] 불공정 행위(부당 특약)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처리 현황 … 87
- [별표 5] 건설사업관리 소홀 감리업체와 감리원 벌점 미부과 현황 … 88

[별표 1]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 및 통보 현황

(단위: 건)

연번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이(C=A-B)	건설공사 현장 점검수(A)	벌점 총괄표 통보 점검수(B)
1	가평군	16	17	1
2	고양시	66	78	12
3	과천시	26	30	4
4	광명시	24	35	11
5	광주시	125	152	27
6	구리시	1	11	10
7	군포시	107	119	12
8	김포시	57	85	28
9	남양주시	113	125	12
10	동두천시	47	50	3
11	부천시	285	296	11
12	성남시	254	279	25
13	수원시	599	628	29
14	시흥시	221	245	24
15	안산시	199	213	14
16	안성시	13	22	9
17	안양시	75	82	7
18	양주시	74	86	12
19	양평군	22	26	4
20	여주시	18	34	16
21	연천군	-	4	5
22	오산시	33	45	12
23	용인시	149	168	19
24	의왕시	45	54	9
25	의정부시	94	113	19
26	이천시	107	113	6
27	파주시	44	68	24
28	평택시	16	92	76
29	포천시	16	21	5
30	하남시	35	108	73
31	화성시	75	216	141
합계		2,955	3,615	660

자료: 국토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행정처분 등 처리 현황(서울국토관리청)

1. 총괄표

(단위: 명, 개)

대여 현황		처리 결과											
건설기술인	업체	건설기술인						업체					
		계	감사 착수 이전처리①	감사 착수 이후 처리			처리 중	계	감사 착수 이전처리①	감사 착수 이후 처리			처리 중
		소계	감사기간 중 처리②	감사종료 후 처리③		소계		감사기간 중 처리②	감사종료 후 처리③				
43	41(61건)	43	12	31	25	6	0	41 ^{주)} (61건)	6 (16건)	35 (45건)	31 (35건)	8 (10건)	0

주: 대여 현황 41개 업체(61건) 중 건설기술인만 처분대상인 2개 업체(4건)는 감사 착수 이전 처리에 포함

2. 현황

연번	접수일 (기소일)	대여현황			건설기술인				업체					
		건설 기술인	업체	대여기간 (대여자격)	처분완료(일자)	지연기간	처리시기			통보일(기관명)	지연기간	처리시기		
							①	②	③			①	②	③
1	2018. 4. 9. (2016. 9. 8.)	AM	▣▣▣▣건설(주)	2013년 12월~2016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7.)	24개월	○			2021. 3. 9. (경기도)	35개월			○
2	2018. 4. 9. (2016. 9. 8.)	-	▣▣▣▣건설(주)	2011년 6월~2016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7.)	24개월	○			2021. 3. 9. (경기도)	35개월			○
3	2018. 4. 9. (2017. 10. 13.)	AQ	주▣▣▣건설	2014년 9월~2016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7.)	24개월	○			2019. 4. 12. (경기도)	12개월	○		
4	2018. 4. 9. (2017. 10. 13.)	-	주▣▣▣건설	2011년 3월~2013년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7.)	24개월	○			2019. 4. 12. (경기도)	12개월	○		
				2013년11월~2014년 9월 (건설기술경력증)						2019. 4. 12. (가평군)	12개월	○		
				2014년10월~2015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2019. 4. 12. (광주시)	12개월	○		
5	2018. 4. 9. (2016. 9. 8.)	-	-	2013년 1월~2013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7.)	24개월	○			2019. 4. 12. (광주시)	12개월	○		
				2013년 3월~2013년 9월 (건설기술경력증)						2019. 4. 12. (가평군)	12개월	○		
				2013년10월~2016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2019. 4. 12. (경기도)	12개월	○		
6	2018. 4. 9. (2018. 2. 9.)	-	주▣▣▣건설	2013년 2월~2015년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7.)	24개월	○			2019. 4. 12. (경기도)	12개월	○		
7	2018. 4. 9. (2017. 10. 13.)	-	주▣▣▣건설	2014년 3월~2016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6. 9.)	25개월	○			2019. 4. 12. (경기도)	12개월	○		
8	2018. 4. 9. (2017. 10. 13.)	-	주▣▣▣건설	2015년 2월~2016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6. 9.)	25개월	○			2019. 4. 12. (경기도)	12개월	○		
9	2018. 4. 9. (2016. 10. 13.)	-	-	2014년 5월~2015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6. 9.)	25개월	○			2021. 3. 9. (경기도)	35개월			○
10	2018. 4. 9. (2017. 10. 13.)	-	-	2015년 4월~2016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8. 11.)	29개월	○			2021. 3. 9. (경기도)	35개월			○
11	2018. 4. 9. (2016. 9. 8.)	AW	▣▣▣▣건설(주)	2011년 7월~2016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10. 13.)	30개월	○			2021. 3. 9. (경기도)	35개월			○
12	2018. 4. 9. (2017. 10. 13.)	-	주▣▣▣건설	2013년 2월~2014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10. 13.)	30개월	○			2019. 4. 12. (경기도)	12개월	○		
13	2018. 5. 16. (2020. 6. 26.)	AN	-	2011년 3월~2017년12월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정지27개월 (2021.1. 27.)	7개월		○		2021. 2. 1. (인천광역시)	7개월			○
14	2018. 5. 16. (2020. 6. 26.)	-	-	2005년 8월~2017년11월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정지27개월 (2021.1. 27.)	7개월		○		2021. 2. 1. (인천광역시)	7개월			○

연번	접수일 (기소일)	대여 현황			건설기술인				업체					
		건설 기술인	업체	대여기간 (대여자격)	처분완료(일자)	지연기간	처리시기			통보일(기관명)	지연기간	처리시기		
							①	②	③			①	②	③
15	2018. 7. 11. (2018. 11. 19.)	-	-	2010년 1월~2017년 5월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정지27개월 (2021. 1. 27.)	26개월		○		해당 없음		○		
16	2018. 7. 11. (2018. 11. 19.)	-	-	2010년 1월~2017년 5월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정지27개월 (2021. 1. 27.)	26개월		○		해당 없음		○		
17	2018. 7. 11. (2018. 11. 19.)	-	-	2008년 1월~2017년 5월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정지27개월 (2021. 1. 27.)	26개월		○		해당 없음		○		
18	2019. 3. 26.	-	-	2018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2. 16.)	23개월		○		해당 없음		○		
19	2019. 4. 29. (2020. 12. 30.)	-	-	2016년 5월~2018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4. 9.)	3개월		○	2021. 4. 9. (부산시)	3개월	○			
20	2019. 8. 13. (2020. 6. 26.)	-	㉠건설(주)	2014년 12월~2015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1. 5.)	7개월		○	2021. 1. 6. (경상북도)	7개월		○		
21	2019. 8. 13.	-	㉠건설(주)	2014년 5월~2014년 11월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정지27개월 (2021. 3. 26.)	19개월		○	2021. 3. 26. (경상북도)	19개월			○	
22	2019. 8. 13. (2020. 2. 21.)	-	㉠건설(주)	2015년 10월~2017년 7월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정지27개월 (2021. 3. 26.)	13개월		○	2021. 3. 26. (경상북도)	13개월				○
23	2020. 2. 6. (2020. 2. 21.)	-	㉡건설(주)	2014년 7월~2015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1. 1. 5.)	10개월		○	2021. 1. 8. (무안군)	10개월		○		
			-	2015년 2월~2018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충청남도)	10개월		○		
24	2020. 2. 6. (2020. 2. 21.)	-	-	2009년 8월~2014년 6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1. 1. 5.)	10개월		○	2021. 1. 8. (전라남도)	10개월		○		
			-	2014년 10월~2016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전라남도)	10개월		○		
25	2020. 2. 6.	-	-	2015년 7월~2019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1. 5.)	9개월		○	2021. 1. 8. (전라북도)	9개월		○		
26	2020. 2. 6.	-	-	2013년 9월~2016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1. 1. 5.)	9개월		○	2021. 1. 8. (인천시)	9개월		○		
			-	2016년 5월~2019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전라남도)	9개월		○		
27	2020. 2. 6.	-	-	2013년 11월~2014년 1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1. 1. 5.)	9개월		○	2021. 1. 8. (경기도)	9개월		○		
			-	2014년 11월~2015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전라남도)	9개월		○		
			-	2015년 3월~2016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전라남도)	9개월		○		
			-	2016년 3월~2017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전라북도)	9개월		○		
			-	2017년 6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장수군)	9개월		○		
28	2020. 2. 6.	-	-	2015년 5월~2016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1. 5.)	9개월		○	2021. 1. 8. (광양시)	9개월		○		
29	2020. 2. 6.	-	-	2011년 10월~2014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1. 1. 5.)	9개월		○	2021. 1. 8. (전라남도)	9개월		○		
			주◀◀	2015년 1월~2017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전라북도)	9개월		○		
			-	2017년 5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전라남도)	9개월		○		
30	2020. 2. 6.	-	-	2012년 10월~2017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1. 2. 16.)	12개월		○	2021. 2. 16. (경상남도)	12개월		○		
			-	2017년 2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2. 16. (경상남도)	12개월		○		

연번	접수일 (기소일)	대여 현황			건설기술인				업체					
		건설 기술인	업체	대여기간 (대여자격)	처분완료(일자)	지연기간	처리시기			통보일(기관명)	지연기간	처리시기		
							①	②	③			①	②	③
31	2020. 2. 6.	-	-	2010년 5월~2018년 7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3. 16.)	13개월			○	2021. 3. 16. (나주시)	13개월			○
32	2020. 2. 6.	-	-	2014년 4월~2015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1. 1. 5.)	9개월		○	2021. 1. 8. (전라남도)	9개월		○		
				2015년 5월~2015년 7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경상북도 등)	9개월		○		
				2015년 8월~2018년 6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전라남도)	9개월		○		
33	2020. 2. 6.	-	-	2014년 4월~2015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1. 5.)	9개월		○	2021. 1. 8. (경상북도)	9개월		○		
34	2020. 2. 6.	-	-	2014년 6월~2015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1. 1. 5.)	9개월		○	2021. 1. 8. (전라북도)	9개월		○		
				2015년 1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전라북도)	9개월		○		
35	2020. 2. 6.	-	-	2011년 4월~2019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1. 5.)	9개월		○	2021. 1. 8. (전라남도)	9개월		○		
36	2020. 2. 6.	-	☒☒건설(주)	2014년 7월~2018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3. 8.)	13개월			○	2021. 3. 8. (전라남도)	13개월			○
37	2020. 2. 6.	-	-	2013년 9월~2017년 9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1. 1. 5.)	9개월		○	2021. 1. 8. (경기도)	9개월		○		
				2017년 9월~2018년 6월 (건설기술경력증)					2021. 1. 8. (전라남도)	9개월		○		
38	2020. 2. 6.	-	☒☒건설(주)	2014년 9월~2018년 7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1. 5.)	9개월		○	2021. 1. 8. (무안군)	9개월		○		
39	2020. 2. 6.	-	-	2015년 1월~2019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2. 16.)	12개월		○	2021. 2. 16. (전라남도)	12개월		○		
40	2020. 2. 6.	-	-	2015년 3월~2019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2. 16.)	12개월		○	2021. 2. 16. (전라남도)	12개월		○		
41	2020. 2. 6.	-	-	2011년 2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1. 5.)	9개월		○	2021. 1. 8. (전라남도)	9개월		○		
42	2020. 2. 6.	-	-	2015년 6월~2019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2. 16.)	12개월		○	2021. 2. 16. (전라남도)	12개월		○		
43	2020. 2. 6.	-	-	2015년 7월~2019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3. 11.)	13개월			○	2021. 3. 11. (전라남도)	13개월			○

- 주: 1. 지연기간은 통보일(기소일이 늦은 경우 기소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
2. ①은 감사원 감사착수 이전, ②는 감사기간(2020. 12. 6.~2021. 2. 26.) 중, ③은 감사종료 후 처리
3. 연번 15번부터 18번까지는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아니므로 행정처분 불가(자체 종결처리)
4. 연번 19번은 2020. 12. 30. 기소처리되었고, 3개월 후인 2021. 4. 9. 건설기술인 및 업체에 대해 처분
(타 기관 통보 포함)을 완료하였으므로 감사기간 이전 처리건수로 분류
5. 타 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혐의로 통보받은 총 46명 중 무혐의(BB), 수사중(BC) 및 환경
부 소관(BD) 등 3명은 제외

자료: 서울국토관리청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 관련 행정처분 등 처리 현황(익산국토관리청)

1. 총괄표


(단위: 명, 개)

대여 현황		처리 결과												
건설기술인	업체	계	건설기술인					업체						
			감사 착수 이전 처리	감사 착수 이후 처리			계	감사 착수 이전 처리 ①	감사 착수 이후 처리					
소계	감사기간 중 처리	감사종료 후 처리	처리 중	소계	감사기간 중 처리②	감사종료 후 처리③			처리 중④					
50	79(101건)	50	50	0	0	0	0	79 (101건)	-	79 (101건)	39 (56건)	19 (22건)	23 (23건)	

2. 현황

연번	접수일 (기소일)	대여 현황			건설기술인	업체					
		건설기술인	업체	대여기간 (대여자격)	처분 (일자)	통보일 (기관명)	지연기간	처리시기			
								①	②	③	④
1	2020. 1. 16. (2019. 2. 7.)	AR	(주)○○○○건설	2014년 3월~2015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북도)	11개월		○		
			(유)○○○○	2015년 2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2	2020. 1. 16. (2019. 2. 7.)	-	-	2014년 3월~2014년 1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대전광역시)	11개월		○		
			(유)○○○○	2015년 2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3	2020. 1. 16. (2019. 2. 7.)	-	-	2013년 12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4	2020. 1. 16. (2019. 2. 7.)	-	-	2010년 5월~2017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5	2020. 1. 16. (2019. 2. 7.)	-	-	2015년 11월~2016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6년 2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6	2020. 1. 16. (2019. 3. 26.)	-	-	2014년 4월~2014년 9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4년 9월~2015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5년 5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경상북도)	11개월		○		
7	2020. 1. 16. (2019. 3. 26.)	-	-	2013년 4월~2016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6년 5월~2018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8	2020. 1. 16. (2019. 3. 26.)	-	-	2016년 1월~2017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8년 3월~2018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8년 3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북도)	11개월		○		
9	2020. 1. 16. (2019. 3. 26.)	-	-	2015년 9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

연번	접수일 (기소일)	대여 현황			건설기술인	업체					
		건설 기술인	업체	대여기간 (대여자격)	처분 (일자)	통보일 (기관명)	자연기간	처리시기			
								①	②	③	④
10	2020. 1. 16. (2019. 3. 26.)	-	-	2013년 11월~2014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4년 11월~2018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11	2020. 1. 16. (2019. 4. 4.)	-	-	2014년 2월~2016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제주도)	11개월		○		
			-	2016년 6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제주도)	11개월		○		
12	2020. 1. 16. (2019. 4. 4.)	-	(주)○○○○건설	2013년 4월~2017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북도)	11개월		○		
13	2020. 1. 16. (2019. 4. 4.)	-	-	2012년 3월~2017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7년 4월~2017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7년 11월~2017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7년 1월~2019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대전광역시)	11개월		○		
14	2020. 1. 16. (2019. 4. 4.)	-	-	2014년 6월~2018년 6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	
15	2020. 1. 16. (2019. 4. 4.)	-	-	2010년 10월~2015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	
16	2020. 1. 16. (2019. 4. 4.)	-	-	2014년 4월~2016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6년 12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17	2020. 1. 16. (2019. 4. 30.)	-	-	2016년 1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18	2020. 1. 16. (2019. 4. 30.)	-	-	2014년 3월~2015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서울특별시)	14개월			○	
			-	2015년 4월~2018년 1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19	2020. 1. 16. (2019. 4. 30.)	-	-	2012년 7월~2017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20	2020. 1. 16. (2019. 4. 30.)	-	-	2013년 1월~2016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6년 12월~2017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7년 3월~2018년 8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21	2020. 1. 16. (2019. 4. 30.)	-	-	2011년 6월~2017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22	2020. 1. 16. (2019. 4. 30.)	-	-	2013년 1월~2017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연번	접수일 (기소일)	대여 현황			건설기술인	업체					
		건설 기술인	업체	대여기간 (대여자적)	처분 (일자)	통보일 (기관명)	지연기간	처리시기			
								①	②	③	④
23	2020. 1. 16. (2019. 4. 30.)	-	-	2013년 4월~2015년 1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5년 12월~2019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24	2020. 1. 16 (2019. 4. 30.)	-	-	2015년 3월~2015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유) 	2015년 9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25	2020. 1. 16 (2019. 4. 30.)	-	-	2014년 3월~2015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	2015년 5월~2018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26	2020. 1. 16 (2019. 4. 30.)	-	-	2015년 1월~2015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5년 6월~2015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5년 11월~2018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8년 4월~2019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27	2020. 1. 16 (2019. 6. 27.)	-	-	2012년 2월~2015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28	2020. 1. 16 (2019. 6. 27.)	-	-	2013년 10월~2015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8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9	2020. 1. 16 (2019. 6. 27.)	-	-	2014년 4월~2015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5년 6월~2016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강원도)	11개월		○		
			-	2016년 8월~2017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	2017년 10월~2018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30	2020. 1. 16 (2019. 6. 27.)	-	-	2011년 7월~2014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7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31	2020. 1. 16 (2019. 6. 27.)	-	-	2014년 4월~2014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4년 10월~2015년 7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5년 7월~2017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7년 3월~2018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8년 3월~2018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8년 4월~2018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	2018년 9월~2019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연번	접수일 (기소일)	대여 현황			건설기술인	업체					
		건설 기술인	업체	대여기간 (대여자격)	처분 (일자)	통보일 (기관명)	지연기간	처리시기			
								①	②	③	④
32	2020. 1. 16. (2019. 9. 24.)	-	-	2013년 7월~2014년 1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33	2020. 1. 16. (2019. 9. 24.)	-	-	2013년 4월~2016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6년 5월~2017년 6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34	2020. 1. 16. (2019. 9. 24.)	-	-	2015년 9월~2019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1. 3. 12. (경상남도)	14개월			○	
35	2020. 1. 16. (2019. 9. 24.)	-	-	2014년 3월~2014년 1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경기도)	14개월			○	
			-	2014년 12월~2015년 1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	2015년 12월~2018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36	2020. 1. 16. (2019. 9. 24.)	-	-	2012년 10월~2015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광주광역시)	11개월		○		
			-	2016년 2월~2017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
			주	2017년 3월~2017년 1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37	2020. 1. 16. (2019. 9. 24.)	-	-	2015년 6월~2016년 6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경기도)	14개월			○	
			-	2016년 9월~2019년 4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북도)	11개월		○		
38	2020. 1. 16. (2019. 10. 10.)	-	-	2016년 6월~2019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39	2020. 1. 16. (2019. 10. 10.)	-	-	2013년 9월~2015년 6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5년 6월~2015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	2015년 10월~2017년 9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7년 9월~2018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대구광역시)	11개월		○		
			-	2018년 1월~2018년 6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대구광역시)	11개월		○		
40	2020. 1. 16. (2019. 10. 10.)	-	-	2014년 1월~2017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	2017년 4월~2019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41	2020. 1. 16. (2019. 10. 10.)	-	-	2013년 8월~2015년 1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경기도)	11개월			○	
			-	2015년 11월~2017년 10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강원도)	14개월			○	
			-	2018년 2월~2019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인천광역시)	11개월		○		

연번	접수일 (기소일)	대여 현황			건설기술인	업체					
		건설 기술인	업체	대여기간 (대여자격)	처분 (일자)	통보일 (기관명)	지연기간	처리시기			
								①	②	③	④
42	2020. 1. 16. (2019. 10. 10.)	-	-	2014년 4월~2016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부산광역시)	11개월		○		
			-	2016년 5월~2018년 5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남도)	14개월			○	
			-	2018년 6월~2018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북도)	11개월		○		
43	2020. 1. 16. (2019. 10. 10.)	-	-	2012년 9월~2017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북도)	11개월		○		
44	2020. 1. 16. (2019. 9. 24.)	-	-	2013년 1월~2019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0. 4. 13.)	2020. 12. 30. (전라남도)	11개월		○		
45	2020. 1. 16. (2019. 9. 24.)	-	-	2014년 7월~2014년 1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전라북도)	14개월			○	
			-	2014년 12월~2017년 7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인천광역시)	14개월			○	
			-	2017년 8월~2018년 1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2020. 4. 13.)	2021. 3. 12. (강원도)	14개월			○	
46	2020. 1. 16. (2020. 11. 10.)	-	주	2017년 2월~2018년 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2. 4.)	2021. 2. 4. (전라남도)	3개월		○		
47	2020. 1. 16. (2020. 11. 10.)	-	-	2017년 9월~2019년 9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2. 4.)	2021. 2. 4. (인천광역시)	3개월		○		
48	2020. 1. 16. (2020. 11. 10.)	-	-	2015년 10월~2018년 12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2. 4.)	2021. 2. 4. (울산광역시)	3개월		○		
49	2020. 1. 16. (2020. 11. 10.)	-	-	2016년 5월~2019년 1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2. 4.)	2021. 2. 4. (전라남도)	3개월		○		
50	2020. 1. 16. (2020. 11. 10.)	-	-	2015년 7월~2019년 3월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2021. 2. 4.)	2021. 2. 4. (전라남도)	3개월		○		

주: 1. 지연기간은 통보일(기소일이 늦은 경우 기소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

2. ①은 감사원 감사착수 이전 처리, ②는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중 처리, ③은 감사종료 후 처리 ④는 처리중

3. 연번 46번부터 50번까지는 건설기술경력증 등 대여에 대하여 2020. 11. 10. 기소처리되었고, 2~3개월 후인 2021. 2. 4. 건설기술인 및 업체(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처분(타 기관 통보 포함)하는 등 지연처리 되지 아니하여 감사기간 이전 처리건수로 분류함

자료: 익산국토관리청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불공정 행위(부당 특약)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처리 현황

연번	행정처분 요청		건설공사명 (공사기간)	수급인 (하수급인)	위반업체 의견제출 (임의)	주요 행정처분 진행 상황				
	일자	기관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통지	청문실시	행정처분
1	2018. 7. 27.	국토부	ㄱ 이용체계 재편사업(2016. 3. 11.~2018. 2. 20.)	-	2018년 8월	2020. 11. 17.	2020. 11. 19.	2021. 2. 10.	2021. 3. 5.	-
2	2018. 7. 30.	국토부	ㄷ 제4공구 건설공사 (2013. 9. 6.~2022. 12. 31.)	-	2018년 8월	2020. 11. 17.	2020. 11. 19.	2021. 2. 10.	2021. 3. 5.	-
3	2018. 8. 8.	국토부	ㄹ 주상복합 개발사업 (2016. 5. 1.~2019. 2. 28.)	-	2018년 8월	2020. 11. 17.	2020. 11. 19.	2021. 2. 4.	2021. 2. 19.	2021. 3. 10.
4	2018. 8. 8.	인천 항만공사	ㅎ (2단계) 건설공사 (2013. 11. 21.~2018. 10. 25.)	-	2018년 8월	2020. 11. 17.	2020. 11. 23.	2021. 2. 4.	2021. 2. 19.	2021. 3. 10.
5	2018. 8. 9.	인천국제 공항공사	ㄱ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2015. 8. 1.~2017. 12. 29.)	-	2018년 8월	2020. 11. 17.	2020. 11. 23.	2021. 2. 4.	2021. 2. 19.	2021. 3. 10.
6	2018. 8. 23.	한국 도로공사	ㄴ 외곽순환 건설공사(2공구) (2015. 3. 9.~2022. 3. 8.)	-	2018년 8월	2020. 11. 17.	2020. 11. 19.	2021. 2. 10.	2021. 3. 5.	-
7	2018. 8. 30.	서울 특별시	ㄷ 터미널(2~5단계) 확장공사 (2016. 5. 5.~2020. 11. 18.)	-	2018년 8월	2020. 11. 17.	2020. 11. 23.	2021. 2. 4.	2021. 2. 19.	2021. 3. 10.
8	2018. 8. 30.	국토부	ㄹ 연수원 신축공사 (2017. 12. 29.~2020. 1. 31.)	-	-	2021. 2. 2.	2021. 2. 19.	2021. 2. 4.	2021. 2. 19.	2021. 3. 10.
9	2018. 9. 10.	국토부	ㅁ 신축공사 (2017. 2. 3.~2019. 9. 25.)	-	-	2021. 2. 3.	2021. 2. 19.	2021. 2. 10.	2021. 3. 5.	2021. 4. 7.
10	2018. 9. 27.	국토부	ㅂ 공동주택 신축공사 (2017. 7. 12.~2019. 12. 31.)	-	-	2021. 2. 3.	2021. 2. 19.	2021. 2. 10.	2021. 3. 12.	2021. 4. 7.
11	2018. 12. 31.	국토부	ㄱ 신축공사 (2018. 2. 1.~2020. 6. 30.)	-	-	2021. 2. 3.	2021. 2. 18.	2021. 2. 10.	2021. 3. 12.	2021. 4. 7.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건설사업관리 소홀 감리업체와 감리원 벌점 미부과 현황

연번	공사명	위반업체명	사유	처분기관	요청일 (처분일)	처분결과	벌점 부과 대상	
							감리업체	감리원
1	ㄸ 공사 2공구	ㄱ(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서울특별시	2018. 1. 23. (2018. 4. 26.)	과태료	(주)ㄱ (주)ㄴ (주)ㄷ	BA
2	ㄱㄷ 건설공사 1공구	-	건설공사대장 통보 위반	경기도	2018. 2. 14. (2018. 3. 22.)	과태료	- - -	-
3	ㄱㄹ 건설공사 3공구	-	하도급 통보 위반	인천광역시	2018. 5. 18. (2018. 6. 5.)	과태료	- -	-
4	ㄱㅁ 건설공사 1공구	-	하도급 건설기술자 배치 위반	안산시	2018. 6. 25. (2018. 7. 17.)	과태료	- -	-
5		-	하도급 건설기술자 배치 위반	광주광역시 북구	2018. 6. 25. (2018. 7. 26.)	과태료	- -	-
6	ㄱㅂ 건설공사 1공구	-	하도급 계약 미통보	인천광역시	2018. 6. 28. (2018. 7. 25.)	과태료	- -	-
7		-	하도급 건설기술자 배치 위반	수원시	2018. 7. 2. (2018. 7. 3.)	과태료	- -	-
8	ㄱㅅ 건설공사 1공구	-	하도급 건설기술자 배치 위반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8. 7. 30. (2018. 8. 9.)	과태료	- -	-
9	ㄱㅇ 건설공사 10공구	-	하도급 통보 위반	서울특별시	2019. 7. 18. (2019. 10. 21.)	과태료	-	-
10	ㄱㅈ 건설공사 19공구	-	하도급 통보 위반	서울특별시	2019. 7. 22. (2019. 10. 21.)	과태료	(주)ㄱ	-
11	ㄱㅊ 건설공사 1공구	-	건설기계 통보 위반	부산광역시	2020. 1. 6. (2020. 1. 13.)	과태료	-	-
12	ㄱㅋ 건설공사 1공구	-	건설공사대장 통보 위반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0. 1. 20. (2020. 2. 17.)	과태료	- -	-
13	ㄱㆁ 건설공사 1공구	-	기타(적격심사 변경 승인, 이행 미흡)	경기도	2020. 9. 4. (2020. 10. 13.)	과태료	-	-
14		-	기타(적격심사 변경 승인, 이행 미흡)	전라남도	2020. 9. 4. (2020. 11. 2.)	과태료	-	-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조 치 기 관 인천광역시

내 용

1. 사건 개요

인천광역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되, [표 1]과 같이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1] 영업정지 기간 감경 및 가중사유 기준

구분	사유	기준
감경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별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8시간 이상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최대 15일)	
가중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 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자료: 관계법령 재구성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건설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후 행정처분 전에 시정을 완료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법정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사유별 1개월씩 최대 2개월)하되, 시정완료의 경우에는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감경해 주어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8시간 이상의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근거로 감경(최대 15일)을 요구한 경우에는 최초 행정처분 시 감경해 준 기간(최대 2개월)에 교육이수 감경을 합한 전체 감경기간이 법정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않을 때만 추가로 감경해 주어야 한다.

3.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C의 경우

인천광역시 *국 ♣과 C는 2018. 8. 13.¹⁾부터 2021. 1. 10.까지 위 관서 ♥국 ♣과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감경 사유가 없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부당 감경

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관련

C는 2018. 10. 1.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 기준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이라 한다)의 자본금 미달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에 자료를 요청(2018. 10. 25.)하여 같은 해 11. 2. 자본금 총계가 326,206,312원으로 정당한 자본금 5억 원²⁾에 미달된 것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를

1) C는 2017. 7. 13.부터 2021. 1. 10.까지 위 관서 ♥국 ♣과에 근무하였으나 2018. 8. 13.부터 위 업무를 담당함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8.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법인의 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규정

위반한 ◇◇을 영업정지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C는 ◇◇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2018. 11. 7.)을 하는 날까지 ◇◇로부터 등록기준에 미달된 자본금을 보완(시정완료)하였다는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C는 ◇◇로부터 미달된 등록기준(자본금)을 보완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지 아니한 채³⁾ 구두로 자본상태가 좋다는 말만 들은 후 근거 없이 ‘시정완료 감경(1개월)’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부과” 문서를 기안하여 건설지원담당 E 및 ♠과장 F의 결재(2018. 11. 7.)를 받아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만큼 부당하게 감경해 주는 등 [별표] “시정완료 감경을 적용한 건설사업자 현황”과 같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8개⁴⁾ 건설사업자의 정당한 영업정지 기간에서 각각 1개월만큼 부당하게 감경해 주었다.

그 결과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에게 정당한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감경해 줌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특혜를 주었다.

나) 불법 하도급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C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업자를 통보받은 후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 I로부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라는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건설은 2018. 12. 14. 실시한 청문에서 불법 하도급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위반내용의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자

3) C는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종료일 30일 이내에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미달된 등록기준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발급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구두로 재무상태가 괜찮다는 확인만 한 것이라고 주장

4) C는 8건을 모두 기안하였고, E는 8건에 결재

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C는 이와 같이 ♣♣건설로부터 위반내용의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고 이미 불법 하도급된 공사도 완료되어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C는 근거 없이 ‘시정완료 감경(1개월)’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부과” 문서를 기안하여 건설지원담당 E 및 ♠과장 F의 결재(2018. 12. 20.)를 받아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만큼 부당하게 감경해 주었다.

그 결과 “1)-가)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다) 직접시공 의무 위반 건설사업자 관련

C는 2019. 3. 20. 국토교통부로부터 2018. 11. 10. “★★(주) B 증축공사”(계약기간: 2018. 9. 12.~2018. 9. 30., 계약금액: 201백만 원)의 수급자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J, 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K)과 하도급(철골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비율(50%) 위반 사실⁵⁾을 확인하고 2019. 5. 7. ○○건설 소속 직원으로부터 대표이사(J)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겠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받은 후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C는 영업정지 처분 결정일 다음 날인 2019. 5. 8. 근거 없이 ‘시정완료 감경(1개월)’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건설업 직접시공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주)○○건설]” 문서를 기안하여 건설지원담당 L 및 ♠과장 M의 결재(2019. 5. 8.)를 받아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만큼 부당하게 감경해 주었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등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은 도급받은 공사 중 64%를 하도급하여 직접시공 의무비율(50% 이상)에 미달한 36%만 직접 시공

그 결과 “1)-가)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 영업정지 기간의 최대 감경기준을 초과하여 부당 감경

C는 [표 2]와 같이 2019. 4. 22. 및 같은 해 5.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N, 이하 “◆◆건설”이라 한다) 등 2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법정 최대 감경 기간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만큼을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행정처분 이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이수(8시간)하였다더라도 추가로 감경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표 2] 법정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감경받은 건설사업자의 추가 감경 등 명세

(단위: 개월)

건설사업자명	처분일	위반내용	법정 기간	당초 감경	추가 감경
◆◆건설	2019. 4. 22.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요구	2	1	0.5 (15일)
(주)△△건설	2019. 5. 2.	안전점검 미이행 또는 허위로 한 경우	2	1	0.33 (10일)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C는 2019. 4. 18. 및 같은 해 5. 2.⁶⁾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1개월)을 한 ◆◆건설 및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O, 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수료하였다며 감경을 요구하자, 당초 최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만큼을 감경(2개월→1개월)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감경해 줄 수는 없는데도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당초 처분한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을 15일 및 21일로 변경 처분(각각 15일 및 10일⁷⁾ 감경)하는 것으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 문서를 기안(각각 2019.

6) C는 주식회사 △△건설에 2018. 10. 12.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소송으로 영업정지가 중단되었다가 소 취하로 2019. 4. 18. 재처분함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 따르면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은 이사 2명이 건설업 교육을 이수

4. 22. 및 5. 2.)하여 같은 날 건설지원담당 L 및 ♡과장 M의 결재를 받아 정당한 영업정지 기간보다 각각 15일 및 10일을 부당하게 감경해 주었다.

한편, C는 ◆◆건설 및 △△건설에 교육이수 감경을 적용해 준 이후(정확한 날짜 모름) 건설지원담당 L로부터 앞으로 교육이수 감경을 적용할 때에는 법정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를 받았고, 그 후 2019. 10. 7. 주식회사 ※※건설이 교육이수 감경을 요청한 데 대해 이미 법정 영업정지 기간(2개월)의 2분의 1(1개월)만큼 감경해 준 것을 확인하고 추가 감경해 주지 않은 바 있다.

그 결과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에게 처분한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추가로 감경해 줌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특혜를 주었다.

나. E의 경우

인천광역시 ♡국 ♡과 E는 2018. 8. 10.부터 2019. 1. 31.까지 및 2020. 7. 20.부터 2021. 4. 2. 현재까지 위 관서 건설지원담당직의 직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E는 건설지원담당직의 직위에서 근무하기 전인 2008. 8. 26.부터 2010. 8. 24.까지 및 2011. 8. 25.부터 2012. 8. 26.까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약 3년간)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E는 “가-1)-가)항” 및 “가-1)-나)항”과 같이 업무 담당자 C로부터 결재를 요청받은 ◇◇ 등 9개⁸⁾(각각 8개 및 1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문서

의 첨부서류로서 행정처분 사유와 감경 적용 내용 등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조서”에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업무 담당자가 당연히 확인하고 검토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첨부서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 사유에 대한 근거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였으며, 이후 과장 F가 최종 결재(2018. 11. 7.)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만큼 부당하게 감경해 주는 등 9개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만큼 부당하게 감경해 주었다.

그 후 업무 담당자 C, 건설지원담당 E는 2020. 12. 7.부터 감사원에서 건설법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자 “가-1)-가)항”과 같이 부당하게 감경하여 준 총 8개 건설사업자 중 2020. 12. 25. 현재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 등 4개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경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0. 12. 22. 및 같은 해 12. 24. 영업정지 처분을 변경(감경 1개월 취소)하였다.

그 결과 “가-1)-가)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업무 담당자 C는 최초로 시정완료 감경을 적용해 준 ◇◇이 청문 당일(2018. 11. 5.)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고 구두로 주장하자 건설지원담당 E에게 감경해 주어도 되는지를 물어 보았고, E로부터 시정완료 감경을 적용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C는 E가 영업정지 부과대상 업체가 말로만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시정완료 감경을 적용해 주라

8) “가-1)-가)항”의 8개와 “가-1)-나)항”의 1개 건설사업자

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E는 평소 행정처분 감경 시 업체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감경해 주라는 얘기는 했으나, 어떤 업체든 구두 보고만으로 감경해 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지시한 바 없으며, 업무 담당자가 업체의 구두 설명만으로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감경해 주겠다고 보고하였다면 당연히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는 ◇◇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상태표를 직접 검토하여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C의 주장처럼 E가 업체의 구두 주장만 있어도 시정완료 감경을 적용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업무 담당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완료 감경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된 내용(자본금 미달)이 시정완료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처리 절차인데도 총 10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위반내용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조차 요구하거나 제출받지 않은 채 부당 감경한 것이므로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징계요구 양정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와 E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와 E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

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별표]

시정완료 감경을 적용한 건설사업자 현황

(단위: 개월)

연 번	건설사업자명	법령 위반 내용	처분일	영업정지 기간			비고	관련자		
				법정 기간	실제 처분	정당 처분 ^{주)}		담당자	팀장	과장
1	◇◇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2018. 11. 7.	6	4	5	영업정지 기간 중 보완 완료	C	E	(F)
2	-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2020. 7. 24.	6	4	5	영업정지 처분 이후 폐업(2020. 12. 22.)	C	E	(G)
3	-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2020. 7. 24.	6	4	5	영업정지 처분 이후 폐업(2021. 1. 5.)	C	E	(G)
4	(주)☆☆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외 1)	2020. 8. 25.	6	4	5	영업정지 1개월 추가 처분(2020. 12. 24.) 및 영업정지 기간 중 미보완→등록말소 (2021. 3. 31.)	C	E	(G)
5	-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2020. 8. 26.	6	4	5	영업정지 1개월 추가 처분(2020. 12. 22.) 및 영업정지 기간 중 미보완→등록말소 (2021. 3. 31.)	C	E	(G)
6	-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2020. 8. 27.	6	4	5	영업정지 1개월 추가 처분(2020. 12. 22.) 및 영업정지 기간 중 미보완→등록말소 (2021. 3. 31.)	C	E	(G)
7	-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2020. 9. 17.	6	4	5	영업정지 1개월 추가 처분(2020. 12. 22.) 및 영업정지 기간 중 보완 완료	C	E	(G)
8	-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2020. 9. 18.	6	4	5	영업정지 처분 이후 폐업(2020. 12. 15.)	C	E	(G)

주: 정당 처분 기간은 법정 기간에서 부당하게 감경(시정완료 감경)하여 준 1개월을 제외한 기간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업무 태만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내 용

1.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7장 제2조 나항 제3호 및 다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자료는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V의 경우

서울특별시 ○실 ■과 V는 2018. 9. 13.부터 2021. 2. 26. 현재까지 위 관서에 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V는 2016. 8. 1.부터 2018. 4. 22.까지 경기도 ☆실 ★실에서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9. 13.부터는 서울특별시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후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V는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던 초기에 BE 등 동료 직원으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¹⁾에 나온 미처분 건설사업자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또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후관리 화면에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업자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V는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상시 상급자인 *팀장 X 및 ■과

1)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정보의 종합관리 및 불법·부적격 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위해 구축한 정보망으로 일명 키스콘(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이라 함

장 Y로부터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은 중요하므로 잘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1) 등록기준 미보완 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업무 태만

그런데 V는 2019. 8. 13.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한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W,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해 ① ‘미달사항은 처분 종료일까지 반드시 보완하고 미보완 시 등록이 말소되며’, ② ‘자본금 미달사항은 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을 받고’, ③ ‘미달사항을 보완한 경우 입증서류를 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과)로 제출한 후 담당자에게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설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2019. 9. 9.~2020. 2. 8.) 통지서”를 작성하여 *팀장 X 및 ○과장 Y의 결재를 받아 ○○건설에 통지하고서도 위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달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²⁾하지 않았는데도 등록기준 보완 여부 확인을 위해 공시송달을 하려면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반송확인 등 절차가 길고 대형건설업체가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건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처분 종료일(2020. 2. 8.)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표 1]과 같이 7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 V가 직접 기안하여 ○○건설에 통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에 따르면, 자본금 미달사항은 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을 받은 후 입증서류를 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하도록 통지하였음. 따라서 위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으로 더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달사항을 보완한 입증서류를 서울특별시에 송부할 의무가 있는데 늦어도 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 까지 입증서류를 송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달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미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여 2020. 12. 14. 건설업 등록을 말소함

[표 1]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미보완한 건설사업자 처리 현황

소속	직급/성명	재직기간	건설사업자명	영업정지 종료일	보완 확인 여부	행정처분	
						처분 사전통지	등록말소
과	V	2018. 9. 13.~ 2021. 2. 26. 현재	○○건설	2020. 2. 8.	미확인	2020. 12. 14.	2020. 12. 14.
			■■■건설(주)	2020. 3. 30.	미확인	“해당 없음”(보완 완료)	
			-	2020. 5. 1.	미확인	2021. 3. 9.	2021. 4. 19.
			(주)■■■건설	2020. 9. 21.	미확인	“해당 없음”(보완 완료)	
			-	2020. 9. 30.	미확인	2021. 1. 22.	2021. 2. 10.
			-	2020. 9. 30.	미확인	2021. 4. 5.	2021. 4. 12.
			-	2020. 9. 30.	미확인	2021. 1. 22.	2021. 2. 10.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후 V는 2020. 12. 7.부터 감사원에서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자, 그때서야 위 7개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그중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5개³⁾ 건설사업자에 대해 최대 11개월이나 늦은 2020. 12. 14.부터 2021. 4. 19. 사이에 등록을 말소하였다.

그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할 건설사업자(무자격자)가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게 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등을 일실했다.

2) 법령 위반(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태만

V는 서울특별시가 2018. 1. 25.부터 2020. 9. 30.까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216건을 통보받아 그중 98건에 대해 행정처분 업무를 하면서, 24건은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이전에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V는 2018. 5. 2. **센터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2018. 4. 24. 기준)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BF)에 대해 통보받아 10개

3) 7개 건설사업자 중 ■■■건설(주) 및 (주)■■■건설의 경우 V가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감사 시 영업정지 기간 중에 미달된 등록기준이 보완된 사실이 소명됨

월이 지난 2019. 3. 20. 처분 사전통보만 진행하고 더 이상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후 V는 주식회사 ☆☆건설에 대해 2019. 7. 11. 등 3차례⁴⁾에 걸쳐 **센터로부터 같은 위반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도 19개월이 지난 감사종료일(2021. 2. 26.)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등⁵⁾ 총 74건의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안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장기간 처리하지 않다가 2020. 12. 7. 감사착수 이후에서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2021. 4. 23. 현재 42건은 행정처분을 완료(감사기간 중 17건, 감사종료 이후 25건)하였고, 나머지 32건은 향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그 결과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장기간 지연하여 같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건설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일실했다.

나. X의 경우

서울특별시 ○실 ■과 X는 2019. 7. 8.부터 2021. 4. 12. 현재까지 위 관서 *팀장의 직위에서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 업무를 총괄 담당(실무 책임자)하면서, 결재권자인 ■과장 Y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따라서 X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보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4) 2019. 7. 11., 2020. 2. 20. 및 같은 해 9. 24. **센터로부터 주식회사 ☆☆건설에 대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어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음

5) 서울특별시는 감사원 감사 이후인 2021. 3. 9. (주)☆☆건설에 대해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등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19. 건설업 등록을 말소

아니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지시하여야 했다.

또한 X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장기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을 경우, 조속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1) 등록기준 미보완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 업무 태만

“가-1)항”과 같이 V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설사업자에게 ‘미달사항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반드시 보완하고 미보완 시 등록말소’한다는 등의 이행사항을 자세히 기재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작성하여 X에게 결재를 올렸고, X는 이를 꼼꼼히 읽어본 후 결재하는 등 V를 비롯한 위 관서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 6명은 [별표]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미보완한 건설사업자 처리 현황”과 같이 총 22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 등 이행사항을 자세히 기재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작성한 후 X의 검토·결재를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서도 미달된 등록기준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런데 X는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 V 등 6명이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업무 담당자가 등록말소 처분을 하지 않는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2020. 12. 7.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두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 후 X와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 6명은 [별표]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을 미보완한 건설사업자 처리현황”과 같이 총 22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미달된 등록기준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미달된 등록기준 보완이 소명된 3개 건설사업자⁶⁾를 제외한 19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2021. 4. 19.까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였다.

그 결과 “가-1)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 법령 위반(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태만

“가-2)항”과 같이 V 등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는 2018. 1. 25.부터 2020. 9. 30.까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법령 위반(등록기준 미달 등)이 의심되는 216건을 통보받아 그중 114건은 2020. 12. 7. 감사 착수 이전에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나머지 102건은 최대 32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런데 X는 이와 같이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 V 등 5명이 현안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 사전통보조차 하지 않는 등 장기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조속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2020. 12. 7.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두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그 후 X와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 5명은 [표 2]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총 102건 중 67건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행정처분을 완료(감사기간 중 35건, 감사종료 이후 32건)하였고, 나머지 35건은 향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6) ■■■건설(주), (주)■■■건설 및 ■■■건설(주)

[표 2]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현황

소속	업무 담당자	근무기간	감사 이후 처리 현황				지연 기간 (‘21. 4. 23. 기준)
			소계	처분완료		미처분	
				감사 중	감사 후		
계		-	102	35	32	35	-
■과	V	2018. 9. 13.~ 2021. 2. 26. 현재	74	17	25	32	최소 1개월, 최대 32개월 ¹⁾
■과	AA	2020. 6. 1.~ 2021. 2. 26. 현재	9	6	1	2	최소 2개월, 최대 9개월
■과	AB	2020. 1. 17.~ 2021. 2. 26. 현재	11	9	2	0	최소 6개월, 최대 20개월 ²⁾
■과	AC	2018. 1. 18.~ 2021. 1. 17.	2	1	0	1	최소 1개월, 최대 1개월
■과	AD	2019. 3. 4.~ 2021. 2. 26. 현재	6	2	4	0	최소 1.5개월, 최대 30개월 ³⁾

주: 1. 총지연기간 32개월 중 V가 담당한 기간은 28개월임
 2. 총지연기간 20개월 중 AB가 담당한 기간은 7개월임
 3. 총지연기간 30개월 중 AD가 담당한 기간은 15개월임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가-2)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V와 X는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여야 할 건수가 많아 늦어진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람들은 건설사업자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통지하면서, ‘미달 사항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반드시 보완하고 미보완 시 등록말소’한다는 등의 이행사항을 자세히 기재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직접 작성(V)하거나 이를 꼼꼼히 읽어본 후 결재(X)하고서도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 종료일 이후에도 보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장기간 방치하여 무자격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를

통보받아 행정처분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과중 등을 핑계로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 사전통보조차 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법령 위반으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건설사업자와 형평성을 일실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사람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태만히 한 V와 X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V와 X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 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별표]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미보완한 건설사업자 처리 현황

연번	소속	직급/성명	재직기간	건설사업자명	영업정지 종료일	보완 확인 여부	행정처분	
							처분 사전통지	등록말소
1	과	V	2018. 9. 13.~ 2021. 2. 26. 현재	주(주)건설	2020. 2. 8.	미확인	2020. 12. 14.	2020. 12. 14.
				주(주)건설	2020. 3. 30.	미확인	"해당 없음"(보완 완료)	
				-	2020. 5. 1.	미확인	2021. 3. 9.	2021. 4. 19.
				주(주)건설	2020. 9. 21.	미확인	"해당 없음"(보완 완료)	
				-	2020. 9. 30.	미확인	2021. 1. 22.	2021. 2. 10.
				-	2020. 9. 30.	미확인	2021. 4. 5.	2021. 4. 12.
				-	2020. 9. 30.	미확인	2021. 1. 22.	2021. 2. 10.
2	과	Z	2014. 8. 1.~ 2020. 5. 31.	-	2020. 1. 31.	미확인	2021. 3. 10.	2021. 3. 29.
				-	2020. 2. 29.	미확인	2020. 12. 9.	2020. 12. 29.
				-	2020. 3. 31.	미확인	2020. 12. 9.	2020. 12. 29.
				-	2020. 3. 31.	미확인	2021. 1. 19.	2021. 4. 5.
3	과	AA ¹⁾	2020. 2. 28.~ 2021. 2. 26. 현재	-	2020. 1. 31.	미확인	2021. 3. 10.	2021. 3. 29.
				-	2020. 2. 29.	미확인	2020. 12. 9.	2020. 12. 29.
				-	2020. 3. 31.	미확인	2020. 12. 9.	2020. 12. 29.
				-	2020. 3. 31.	미확인	2021. 1. 19.	2021. 4. 5.
				-	2020. 9. 9.	미확인	2020. 12. 9.	2020. 12. 29.
				-	2020. 9. 9.	미확인	2020. 12. 9.	2020. 12. 29.
4	과	AB	2020. 1. 17.~ 2021. 2. 26. 현재	주(주)건설	2020. 3. 1.	미확인	"해당 없음"(보완 완료)	
				-	2020. 5. 31.	미확인	2021. 2. 1.	2020. 3. 2.
				-	2020. 5. 31.	미확인	-	2021. 2. 27.
5	과	AC	2018. 1. 18.~ 2021. 1. 17.	주(주)건설	2020. 6. 19.	미확인	2020. 9. 15.	2020. 12. 1.
				주(주)건설	2020. 8. 31.	미확인	2020. 11. 2.	2020. 12. 1.
				주(주)건설	2020. 9. 30.	미확인	2020. 11. 2.	2020. 12. 1.
				-	2020. 9. 30.	미확인	2021. 1. 5.	2021. 2. 18.
6	과	AD ²⁾	2019. 3. 4.~ 2021. 2. 26. 현재	주(주)▲▲	2020. 9. 19.	미확인	2020. 12. 4.	2021. 1. 21.
				주(주)▲▲	2020. 9. 19.	미확인	2020. 11. 6.	2020. 12. 10.

주: 1. AA이 담당한 6건 중 4건은 2020. 6. 1. Z로부터 인계받은 것임

2. AD는 주(주)▲▲의 경우 영업정지 종료일을 2020. 9. 19.(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2020. 4. 20.~2020. 9. 19.)이 아닌 2020. 11. 4.(실태조사 자료 미보고로 인한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등록말소 처분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업무 태만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내 용

1.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설계·사업관리 등 전문분야별로 등록요건(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영업정지(3개월), 2차 영업정지(6개월) 및 3차 영업정지(12개월) 순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등록기준 미달로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2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으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설계·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지체 없이 1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2차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 2차 처분 종료일까지도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3차 영업정지와 함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서울특별시 ◎국 AE는 2014. 8. 1.부터 2021. 1. 20.까지 위 관서 ◐실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과 법령을 위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다.

AE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50일 이내 미달사항 미보완)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¹⁾ 있었다.

그런데 AE는 2016. 7. 20.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 (대표이사 AF, 이하 “◐◐”라 한다)가 기술인력의 퇴사(2016. 5. 31.)로 등록기준에 미달(발생일로부터 50일이 지난 2016. 7. 20.까지 미보완)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

1) AE는 2014. 8. 1.부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에 질의를 하면서 관련 규정과 업무 등을 파악하였다고 진술

받아 다음 날 확인하고서도 위 문서를 18개월 이상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관계 서류철에 편철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2018. 2. 6.에서야 청문 통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2. 27. “행정처분 결과 통보” 문서를 기안하고 ●팀장 AG²⁾ 및 ●관 AH의 결재를 받아 1차 영업정지(2018. 3. 10.~2018. 6. 9.) 처분을 하였다.

한편, AE는 [표]와 같이 ●●를 제외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AI, 이하 “선기획”이라 한다) 등 3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협회로부터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대 46일 만에 청문 등을 거쳐 1차 영업정지(3개월) 처분을 모두 완료하였다.³⁾

[표]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현황

연번	업체명	1차 영업정지	등록기준 보완 여부	2차 영업정지	정당 처리 시 행정처분(감사원 예상)
1	●●	2018. 3. 10.~6. 9. ※ 18개월 방치	미확인	2021. 1. 1.~6. 30. ※ 19개월 방치	■ 2차 영업정지(6개월: 2018. 6. 10.~2018. 12. 9.) ■ 3차 영업정지(12개월: 2018. 12. 10.~2019. 12. 9.) → 2018. 12. 10. 현재 등록취소 대상
2	▲▲	2019. 9. 1.~11. 30.	미확인	2021. 1. 1.~3. 31. ※ 13개월 방치	■ 2차 영업정지(6개월: 2019. 12. 1.~2020. 5. 31.) → 2019. 12. 16. 미달사항 보완(3차 영업정지 미대상) ※ 2차 영업정지 시 감경(6개월→3개월, 미달사항 보완)
3	㈜▲▲	2019. 9. 1.~11. 30.	미확인	2020. 3. 5.~9. 4. ※ 3개월 방치	■ 2차 영업정지(6개월: 2019. 12. 1.~2020. 5. 31.) ■ 3차 영업정지(12개월: 2020. 6. 1.~2021. 5. 31.) → 2020. 6. 1. 현재 등록취소 대상(2020. 11. 23. 폐업)
4	(유)▼▼	2019. 10. 1.~12. 31.	미확인	2021. 1. 1.~6. 30. ※ 12개월 방치	■ 2차 영업정지(6개월: 2020. 1. 1.~2020. 6. 30.) ■ 3차 영업정지(12개월: 2020. 7. 1.~2021. 6. 30.) → 2020. 7. 1. 현재 등록취소 대상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게다가 AE는 이와 같이 등록기준 미달로 1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던 4개 건설 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1차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 협회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

2) ● 실 ●팀장 AG는 2015. 1. 12.부터 2020. 6. 30.까지 AE의 상급자로서 AE가 기안한 행정처분 문서에 검토(결재)를 하였고, 2020. 12. 31. 정년퇴직

3) ㈜▲▲는 2019. 7. 10. 통보받아 같은 해 8. 26. 영업정지 처분, ㈜▲▲의 경우 2019. 7. 31. 통보받아 같은 해 8. 30. 영업정지 처분, (유)▼▼의 경우 2019. 8. 21. 통보받아 같은 해 9. 19. 영업정지 처분

완 여부를 다시 통보하여 줄 것으로 알았다는 사유로 처분 종료일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AJ)의 경우 처분 종료일(2019. 11. 30.)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2019. 12. 1.부터 2020. 5. 31.까지 2차 영업정지 대상인데도 3개월 늦은 2020. 2. 21.에서야 “건설기술용역업자 행정처분 청문결과 보고” 문서를 기안하고 ●팀장 AG 및 ●관 AK의 결재를 받아 뒤늦게 2차 영업정지(6개월: 2020. 3. 5.~2020. 9. 4.) 처분을 하였다.

이후에도 AE는 18개월 이상 지연하여 뒤늦게 1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던 ●
 ● 등 3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19개월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2020. 11. 13. 감사원이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실태를 점검⁴⁾하자, 그때서야 서둘러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감사기간(2020. 12. 7.~2021. 2. 26.) 중인 2020. 12. 29. 2차 영업정지 일괄 처분을 하였다.⁵⁾

그 결과 AE는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1차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하게 2차 및 3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 ●● 등 3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등록취소 대상(최근 5년간 영업정지 3회)인데도 이보다 경미한 영업정지 처분⁶⁾

4) 자료수집 기간: 2020. 10. 12.~11. 27.(25일간), 실지감사 기간: 2020. 12. 7.~2021. 2. 26.(20일간)
 5) 2020. 12. 29. AE는 “행정처분 결과 통보(●●)” 문서를 기안하고 *팀장 AL 및 ●관 AK가 결재
 6) (주)▲▲의 경우, AE가 1차 영업정지(3개월: 2019. 9. 1.~2019. 11. 30.) 처분을 한 후 처분 종료일(2019. 11. 30.)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2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 2019. 12. 1.부터 2020. 5. 31.까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AE가 행정처분 업무를 13개월 동안 방치(2019. 12. 1.~2020. 12. 28.)하였다가 2차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됨으로써 (주)▲▲은 AE가 방치하였던 기간 중에 미달사항을 보완(2019. 12. 16.)하여 2차 영업정지 처분 시 법정 영업정지 기간 6개월의 2분의 1인 3개

만 받게 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AE는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업무의 우선순위를 과태료 처분에 두다 보니 영업정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E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에는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자격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미한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후순위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행정처분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E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E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